#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 [최승철, 윤재영, 김원영, 강민구, 도미화 공저].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 원, 2013

107 p. ;  $19 \times 26 \text{ cm}$ 

ISBN 978-89-6921-125-5 93330 : 비매품

장애인 복지[障碍人福祉]

338.3-KDC5 362.4-DDC21

CIP2013027404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최 승 철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부장)

공동연구원 : 윤 재 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원 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강 민 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도 미 화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위촉연구원)

### 자문위원

문 진 영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석 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센터장)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평가위원

강 민 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 세 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서 해 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선임연구원)



### 발간사

아·태 지역의 정부 대표들이 우리나라 인천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에 참여하여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2013~2022)에 대한 장관 선언과 아·태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한 지 벌써 1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제1차 및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를 개최했던 중국과 일본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 정부는 이 정부간고위급회의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새로운 10년의 이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다른 지역의 귀감이 되는 인천전략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장애인권리실천기금'을 국내에 설치하여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인천전략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다른 나 라와 유엔에스캅은 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애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하는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이러한 국내외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은 인천전략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 인천전략 이행 사무국의 기능을 맡고 있어 그러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서 금번 본원은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인천전략의 지표를 좀 더 분명하고이행 가능하게 설명해 주는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전략은 지난 아·태 장애인 10년의 개발목표인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과 달리 그 목표 달성에서의 진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지표는 인천전략의 이행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바,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하며, 그 측정에 필요 한 데이터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지표는 제대로 측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인권 지표에 대해 이를 해설하는 소위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국제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의 지표들도 지표별 메타데이터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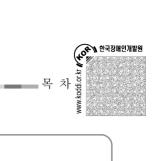
인천전략안의 작성에 참여했던 본원은 처음부터 그 어느 기관보다도 인천 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바, 인천전략 이 선포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메타데이터시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에스캅 사무국이 인천전략 지표에 대해 공식적인 메타데 이터시트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유엔에스캅 사 무국은 현재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는 명칭으로 인천전략 지 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가 유엔에스캅의 공식적인 메타데이터시트 초안 작성과 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아·태지역 정부들의 논의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지표의 메타데이터시트를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변용찬



# 목 차

1	Ⅰ.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작성 배경
	1.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필요성 3
	2.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작성에서 고려한 주요 사항 … 4
	3.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구성 7
	4. 인천전략의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8
Ī	Ⅱ. 인천전략 핵심지표별 메타데이터시트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력 평가)
	국제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15
	1.2 전체 고용인구 대 고용 장애인 비율17
	1.3 훈련받은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18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율 … 20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22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인의 비율25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27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청사의 비율31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34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막 및
	수화통역의 비율37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 비율39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 42
4.1	정부 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4.2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등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50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수52
5.2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55
5.3	장애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58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59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비율61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63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67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
	그램 수70
7.1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가용성72
7.2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포괄적인 훈련의
	가용성75



7.3	접근 가능한 긴급대피소 및 재난구호소의 비율77
8.1	ICF에 근거한 장애의 연령·성별·인종·사회경제적 지위별
	출현율
8.2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 수 ······83
8.3	건강·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주류 개발프로그램 및
	정부 서비스에서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분리 데이터의 가용성87
9.1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 수89
9.2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별금지법의 유무91
10.3	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94

# Kood of .

I.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작성 배경



### Ⅰ.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작성 배경

### 1.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필요성

에스캅 지역의 정부들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을 입안하기 위해지난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대한민국의 인천에 모여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부들은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에 대한 장관 선언과 아·태 장애인 "권리 실현"(Make the Right Real)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했다.

인천전략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로, 이는 아·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포 괄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 (goals), 27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형식은 이미 새천년개발목표에서도 발견된다. 이 구성 형식은 지난 아·태 장애인 10년의 개발목표인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과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천전략은 비와코 행동계획과 달리 아·태지역 수준이나 일국 수준에서 개발목표 달성의 진척을 모니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목표에 대한 지표는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 산식이 간략하며 측정에 동원되는 데이터가 가용하거나 획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측정 가능하며, 그럼으로써 해당 개발목표의 달성에서의 진척을 점검하는 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지표를 구성할 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한 일단 구성된 지표에 대해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그 산식을 간략하게 제시하며 그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지표에 대해 이러한 설명을 해주는 문건은 소위 메타데이터시트(metadata sheet)라 부른다. 이와 같은 메타데이터시트가 작성된지표를 가진 대표적인 개발목표는 MDGs이다.

한편 인천전략의 지표를 만들 때 유엔에스캅과 정부들 및 장애인단체들은 지표

정의의 분명함, 산식의 간략함,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획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지만, 그 실현에서의 진척을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반드시 모니터해야 하는 중요한 장애인 권리를 다루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러한 측정이어려운 지표도 인천전략 지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잘 측정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다른 지표에대해서도 모든 아·태국가들에서 일관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인천전략 지표의 메타데이터시트』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리고 유엔에스 캅이 전문가 및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2014년 초까지 작성할 예정인 '인천전략 지표의 데이터 축적을 위한 가이드북'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2.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작성에서 고려한 주요 사항

인천전략 지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지표이다. 대부분의 지표가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한다. '국제빈곤선 이하의 생활비로 사는 장애인의 비율',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비율'과 같은 인천전략 지표에서 장애인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표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천전략 지표에서 어떠한 장애인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일단 아·태국가 모두를 가로질러 동일한 장애 정의를 사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장애 정의는 권위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기왕에 인천전략 지표 중에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 근거한 장애 출현율을 측정하는 지표 8.1이 있고, ICF에 근거한 장애 정의는 유엔 차원에서 권장하는, 소위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를 인천전략 지표를 위한 장애 정의로 채택해볼 수 있을 것이다.

ICF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인천전략 지표에 적용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이를 함께 적용하는 아·태국가들을 가로질러 비교가 가능한 장애 통계의 생산 및 지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점은 대부분의 아·태 국가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장애 정의와 ICF에 근거한 장애 정의 간의 정책적 격차를 파악함으로써 자신들이 국제 표준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인지하게 되고 그 국제 표준을 향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ICF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인천전략 지표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그로부터 얻는 이점도 상기의 것들밖에는 없고 그 단점이 적지 않다.

이미 대다수의 아·태국가들은 인천전략 목표의 이행과 연관이 있는 장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정책들은 자신들의 장애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서의 진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그리고 연관된 인천전략 목표 달성에서의 진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해당 정책에 의해 망라되었는지, 해당 정책은 망라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얼마만큼 실제로 증진시켰는지 등을 포착하는 것이다. 인천전략지표의 측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비교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좀 더 중요한 것은 일국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증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등의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만약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서 아·태국가들이 ICF에 입각한 장애 정의를 사용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장애인 숫자는 현행 장애 정의에 입각한 장애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확인된 아주 많은 장애인들은 현재해당 국가들에서 장애인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ICF에 근거하여 정의된 장애인 개념을 인천전략 지표에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천전략의 주요 목표의 하나는 새롭게 추가로 확인된 아주 많은 장애인들까지로 국가의 장애 정책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아·태국가에게는 상당한 입법적·정책적 부담이 되고 이는 실행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현재 많은 아·태국가들은 자신들의 장애 정의에 따른 장애인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들의 권리를 중진하는 데 충분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ICF에 입각한 장애 정의를 인천전략 지표 데이터 구축에 사용한다면, 관련행정 데이터는 인천전략 지표 데이터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행정 데이터는 모두 국내 장애 정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물론 ICF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사용할 때 앞서 언급한 이점은 있다. 특히 의료적인 장애 정의를 사용하는 국가는 그에 근거한 장애 출현율과 ICF에 근거한 자국의 장애 출현율 사이의 격차를 알게 되면 자국의 장애 정의를 개선할 필요성과 그개선 방향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표 8.1을 측정하면 충족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아·태국가들은 인천전략 지표를 측정할 때 자국이 어떤 장애 정의를 지표에 적용하는지 명시해야 하고 이 장애 정의를 가능한 한 모든 지표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를 어떤 지표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장애 정의를 적용할 경우, 이를 밝히고 그 다른 장애 정의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전략 지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일부 지표에서 발견되는 불분명함이다. 상당수의 인천전략 지표에서 '비율'(proportion)을 측정하는데, 일부 지표에서 그 비율의 분모가 불분명하다. 또한 일부 지표에서 '범위'(coverage)나 '가용성'(availability)을 측정하는데, 이것들이 수혜자의 숫자를 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 등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일부 지표가 타깃으로 삼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어떤 내용의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어야 해당 지표가 말하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되는지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프로그램', '조기개입 서비스',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 '장애포괄적인 위험감소 계획' 등의 개념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념의 불분명성은 사실 어떤 메타데이터시트로써도 해소하기 어렵다.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는 일단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아·태국가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그러한 개념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데 주력했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의를 했다. 그럼에도 인천전략 지표가 지표로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의적인 해석도 했다.

앞서 언급한 장애 정의의 문제와 지표 개념들의 불분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해석과 결정은 '아·태 장애인 10년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포함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유엔에스캅의 몫이다.



### 3.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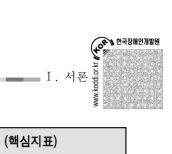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의 틀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OHCHR)의 인권 이행의 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보고서(Report on Indicators for Promot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HRI/MC/2008/3) 및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HR/PUB/12/5)에 근거했다. 이들 OHCHR 문건은 특정 권리 구현에서의 진척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등 세 가지 형태로 해당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며, 각 지표에 대해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할 것도 권고한다.

이 문건들이 제시하는 메타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지표별 정의(definition), 근거 (rationale), 산식(method of computation), 자료 수집 및 출처(data collection and source), 측정 주기(periodicity), 분리(disaggregation), 코멘트 및 한계(comments and limitations)이다. 여기서 '근거'는 주로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권위 있는 근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에서는 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해당 조항을 그 근거로 삼았다. '분리'에서는 해당 지표의 데이터나 정보가 성, 연령 등과 같은 유의미한 변수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적시한다.

인천전략은 총 62개의 지표로 구성되는데, 그 중 43개 핵심지표(core indicator) 이고 나머지 19개가 보충지표(supplementary indicators)이다. 『인천전략 지표의 메타데이터시트』는 이 중 핵심지표를 대상으로 하는데, 목표 10의 핵심지표의 상당수는 유엔에스캅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기에 이 중 한 개만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총 32개의 핵심지표에 대해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했다. 한편 보충지표는 대개핵심지표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는 핵심지표의 것을 참조하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4. 인천전략의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세부목표 1.A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
세부목표 1.B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 로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	력평가) 국제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 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1.2 전체 고용 인구 대 고용 장애인의 비율 1.3 훈련받은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세부목표 1.C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 인의 참여를 증진한다.	반는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목표 2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율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
세부목표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 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인의 비율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 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세부목표 3.A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게 개방된 물리 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청사의 비율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
세부목표 3.B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 되는 자막 및 수화통역의 비율 -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
세부목표 3.C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 비율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세부목표 3.D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 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장애인의 비율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목표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세부목표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 상시킨다.	4.1 정부 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4.2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등 사회적 보호		
세부목표 4.B 사회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 혜범위를 늘린다.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세부목표 4.C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하는 장 애인, 특히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		
목표 5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세부목표 5.A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수 5.2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 5.3 장애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		
세부목표 5.B 초중등 교육 취학률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목표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세부목표 6.A 장애 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 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		
세부목표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 . 애여성의 의석 비율		
세부목표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 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 녀 및 여성의 비율		
세부목표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늘린다.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소녀및 여성을 위해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수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목표 7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세부목표 7.A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	7.1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가용성 7.2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포
세부목표 7.B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 을 강화한다.	괄적인 훈련의 가용성 7.3 접근 가능한 긴급대피소 및 재난구호소의 비율
목표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세부목표 8.A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장애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	8.1 ICF 에 근거한 장애의 연령·성별·인종·사회경 제적 지위별 출현율 8.2 인천전략의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
세부목표 8.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 태 장애인 10년의 중간시점은 2017 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 통계를 구축한다.	해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 수 8.3 건강·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주류 개발프로그램 및 정부 서비스에서 장애여성및 소녀에 대한 분리 데이터의 가용성
목표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의 국내 법의 조화 촉진	
세부목표 9.A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의 중간시 점(2017년)까지 10개의 아·태지역 정 부가 추가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고, 종료시점(2022년)까 지 또 다른 10개의 정부가 협약을 비 준 또는 가입한다.	9.1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 수 9.2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별 금지법의 유무
세부목표 9.B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목표 10 하위지역·지역·지역 간 협력의 강화	
세부목표 10.A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캅 다자간기금 또는 기타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10.1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 기금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 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2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목표 10.B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는 그 정 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포괄성을 강 화한다.	아태지역 다자간 기금에 기여하는 연간 공여자 수 10.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 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세부목표 10.C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이슈 및 장애 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역간의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한다.	10.4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남 협력 등 지역 협력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유엔기구의 수 10.5 남남협력 등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위지역 정부간 국가의 수 10.6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참여 하에 수행하는, 남남협력 등의 지역 또는하위 지역사업의 수 10.7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후속조치 검토를 지원하며, 장애포괄개발과 관련하여임무 및 정책, 행동계획, 숙련된 담당조직을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기구의 수 10.8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
※ 목표 10의 핵심지표는 지표 10.3을 제외하면 모 두 유엔에스캅이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따라서 이들 중 지표 10.3에 대해서만 메타데이 터시트를 작성했다.	10.9 에스캅 및 기타 관련 기관에게 ICF 접근법 등 장애통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태지역 통계 전문가의 수 10.10 국가차원에서 유엔프로그램에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한 유엔개발그룹(UNDG) 지침에 따라, 장애포괄개발을 표방하는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유엔개발원조계획(framework)의 수

# Ⅱ. 인천전략 핵심지표별 메타데이터시트



## Ⅱ. 인천전략 핵심지표별 메타데이터시트

지표명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력 평가) 국제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정의	본 지표의 완전한 이름은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대해 조정되는 일일 1.25달러라는 국제빈곤선 이하로 소득을 벌거나 소비를 하는 비장애인의 비율에 대한 당해 국제빈곤선 이하로 소득을 벌거나 소비를 하는 장애인의 비율(rate)의 비율 (ratio)이다. PPP는 국가들 간의 가격 수준 차이의 지표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양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통화 단위가 드는지를 가리킨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 국에 대한 PPP를 공표한다.
근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 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지표는 당사국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 수준의 생활하는지 여부를,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다.
산식	(PPP에 대해 조정되는 일일 1.25달러 이하로 소득을 벌거나 소비를 하는 장애인 총수 / 장애인 총 인구수) / (PPP에 대해 조정되는 일 일 1.25달러 이하로 소득을 벌거나 소비를 하는 비장애인 총수 / 비장애인 총 인구수)

자료 수집 및 출처	빈곤을 측정하고 소비자 물가로 웨이트한 가구의 재화 및 용역의 소비를 측정하는 가계소비조사(Household Budget Survey: HBS) 타입의 가구조사가 본 지표를 위한 데이터의 출처가 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조사는 장애에 관한 변수를 포함해야 한다.
주기	5년. HBS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라 개발도상국에 서는 자주 실시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분리	가구주가 여성인지 또는 남성인지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 HBS 타 입의 조사 데이터는 가용하지 않다.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빈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나라마다 서로 다른 빈곤 정의를 가지고 있기에 본 지표가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PPP는 극빈자가소비하는 재화의 비교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국 내에서 도농 간 빈곤선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 그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자세히언급되어 있다.1)

<sup>1)</sup> MDGs의 지표에 전체 인구대비 세계빈곤선 1일 1인 1달러 이하 인구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본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mdgs.un.org/unsd/mdg/Resources/Attach/Indicators/Handbook English.pdf) 참고.



지표명	1.2 전체 고용인구 대 고용 장애인 비율
정의	본 지표의 완전한 이름은 특정 기간에서의 '전체 인구의 고용률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율의 비율'(the ratio of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ared to the employment rate of the general population)이다. 고용이란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일반적으로 15세 이상) 특정 기간 동안 임금이나 급료를 받고 일하거나 사업체나 농장 등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소유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 기간은 하루나 한 주를 단위로 한다.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터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단위기간 동안 고용된 것으로 본다.2)
근거	CRPD 제27조 제1항은 당사국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제27조 제1항 가호~카호에 열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위한 조치, 적극적 고용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의 구현을 보여주는 지표로 결과지표에 해당한다.
산식	(15세 이상의 고용된 장애인 총수 / 15세 이상 장애인 총수) / (15 세 이상의 고용된 비장애인 총수 / 15세 이상 비장애인 총수)
자료 수집 및 출처	데이터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변수가 들어간 인구센서스, 노동력 조사, 인구 및 건강 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핵심복지지표설문조사 형태의 전국 조사이다.3)

<sup>2)</sup>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Resolutions Concern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dopted by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October 1982, para. 9

<sup>3)</sup>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구조사 (household survey) 및 다른 일국적 데이터 출처(national data sources)에 대해서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 ennium Development Goals, annex 2. (http://mdgs.un.org/unsd/mdg/Resources/Attach/Indicators/H andbookEnglish.pdf) 참고.

주기	1년 또는 3~5년
분리	본 지표는 고용 여부를 묻는 서베이 데이터를 장애로 분리함으로써 측정된다. 고용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간의 격차를 보기 위해 추가로 성별로 분리할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고용이라는 개념은 노동시장 발전 수준과 시장경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른 근거를 지닌다. 비록 고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분명한 국제적 기준이 있지만 국가들은 고용 지위에 대해, 특히 시간제 근로자나 가족 근로자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잘 발전되고 인구의 큰 비율이 시장경제로부터 생계를 획득하는 나라에서 고용을 측정하는 것은 좀 더 확실하다.

지표명	1.3 훈련받은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노동 가능 연령의 인구에서 노동가능 연령의 장애인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주류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능력평가, 취업후 지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즉 장애 특정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지원고용 및 보호고용과 같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본 지표는 주류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참여만 포착하지는 않고 이러한 장애 특정적으로 제공된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참여도 포착한다.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인원수는 연인원수다.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등과 같이 한 기관, 같은 장소에서 패키지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한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로 집계한다.



	한편, 어떤 직업훈련이 본 지표의 직업훈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직업 훈련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바, 그 기간을 4주 이상으로 정한다.
근거	CRPD 제27조 제1항 라호는 당사국에게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ILO에 따르면,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정해진 고용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수행하는 조치들로 국가 고용프로그램의 일부를 말한다.4) 직업훈련은 특정한 직업이나 보다 넓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노하우, 스킬과 자격을 갖추도록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직업 교육과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을 의미한다.5) 직업훈련은 크게 학생과 견습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직업훈련 (initial vocational training: IVT)과 주로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평생직업훈련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CVT)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지표에서는 IVT와 CVT 모두를 포괄한다. 직업훈련의 기간은유엔의 기준에 따라 4주 이상의 훈련프로그램으로 제한한다이. 본 지표는 장애인의 노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중진하는데 기여하는고용지원프로그램이라는 조치를 포착하는 것으로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산식	(지난 1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 가능 연령의 장애인 총 수 / 지난 1년 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노동 가능 연령의 인구수) * 100한 기관에서 같은 장소에서 패키지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한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로 집계한다.

<sup>4)</sup> ILO. 2012. Guide for the Formulation of National Employment Policies, p. 185.

<sup>5)</sup>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CEDEFOP). 2008. Terminolog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A selection of 100 key Terms, p. 202.

<sup>6)</sup> UN Secretariat. 1997. Working Party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tatistics: Harmonisation of Training Statistics.

자료 수집 및 출처	관련 행정 통계나, 장애로 분리가 가능한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타입의 가구조사가 본 지표의 데이터 출처가 될 수 있다.
주기	자료 수집 주기는 행정 통계의 경우에 1년, 그리고 가구조사의 경 우에는 3~5년이다.
분리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간 격차를 보기 위해 장애로 분리된 가구조사의 결과를 성별로 분리할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고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노동력조사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단지 도시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경 우가 많다.

지표명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 율 <sup>7)</sup>
정의	본 지표는 국가 의회의 전체 의석 수 또는 의회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의 전체 의석 수 중 장애인의 의석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국가 의회들은 단원 또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국제 비교를 위해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만을 본 지표의 측정에서 고려한다. 일반적인국가 의회는 아니나 국제 의회 연합(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 가입한 국가 기구는 본 지표의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up>7)</sup> http://mdgs.un.org/unsd/mdg/Metadata.aspx에는 전체 의회 의석수 대비 여성 의회 의석수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가 나와 있다.



근거	CRPD 제29조 가호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협약 제29조 나호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공적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본 지표는 협약의 당해 조항들이 보장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이 정치 참여의 중심이라 할 국가입법기구에서 보장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국가입법기구에 대한 참여 자체는 공무담임권 및 정치 참여권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기본권을 측정하는 본 지표는 결과지표에 해당한다.
산식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수 / 국가입법기구의 총 의석 수) * 100 단, 국가 의회가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만 대상으로 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국가입법기구 사무처가 관리하는 국가입법기구 구성원 신상에 대한 자료 만약 이러한 자료에 국가입법기구의 구성원이 장애인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입법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 여부를 묻는 간략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본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주기	국가입법기구 구성원이 전부 또는 일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주기
분리	본 지표는 국가입법기구의 의석 수를 장애로 분리함으로써 측정된다.
코멘트 및 한계	국가입법기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원의 정치가 응축된 곳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는 이들의 사회참여의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입법기구에 대한참여는 단순히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일반투표를 통해 국가입법기구 구성원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이들이 선거활동 및 의정활동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 결과이자 해당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아·태지역에서 일반투표로 국가입법기구 구성원으로 선출되는 장애인의 비율은 극히 낮을 것이고, 국가입법기구에 진출한 장애인은 대개 일반투표가 아닌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서 진출하였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비례대표제 등을 통한 진출도 그 나름대로 해당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일정한수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표명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 숫자 대비,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조직화된 장애인 집단들을 공식적으로 각각 대표 하는 구성원 숫자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본 지표는 다음 두 가지의 취지 중 어느 하나나 둘 모두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취지는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 중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그 장애인 집단의 다양성 정도는 이슈가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장애인 집단의 대표자인지가 이슈가 된다. 두 번째 취지는 국가조정기구의 구성원들이 대표하는 장애인 집단 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표되는 장애인 집단의 다양성을 포착할 경우 장애인 집단들이 얼마나 서로 달라야 국가조정기구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을 별개로 카운트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에 본 지표에서 상기 두 번째 취지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다양한 장애인 집단'은 조직상 별개인,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조정기구의 한 구성원이 어떤 조직화된 장애인 집단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해당 집단이 그 개인이 국가조정기구에서 자신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정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조정기구의 한 구성원이 어떤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에, 그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개인일 필요는 없다. '국가조정기구'란 CRPD 제33조 제1항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 내 조정기구'를 가리킨다.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해설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정책결정자가 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부부처들 사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가 내 기구를 말한다.
근거	CRPD 제33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해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협약 제4조 제3항은 당사국에게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관한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본 지표는 장애의 권리 증진이라는 결과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시킨정도를 포착하는 것인바,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산식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서로 다른 조직화된 장애인 집단(장애인단체)들을 공식적으로 각각 대표하는 구성원 숫자 / 장애 관련국가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 숫자) * 100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가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동일한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개인 여러 명이 국가조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 이는 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수도 있다.
자료 수집 및 출처	국가조정기구 구성원의 인적 사항에 대한 행정기록물
주기	국가조정기구 구성원이 전부 또는 일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주기
분리	국가조정기구 구성원이 대표하는 장애인 집단은 장애여성 집단 대 장애아동 집단 대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 집단들로 분리할 수 있 다. 여기서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 집단들은 각각의 장애유형별로 분리할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지표에서 국가조정기구의 구성원이 대표하는 장애인 집단의 다양성은 측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지적·정신 장애인 등이 특히 더 사회적으로배제되고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장애정책의형성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지표의 또 다른 이슈는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여 국가조정기구에참여하는 개인이 장애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본 지표의 정의는그 개인이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함을 적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CRPD가 국가의 장애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바, 국가조정기구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 II. 인천전략 핵심지표별 메타데이터시oppowwww
지표명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 애인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GEWE)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내의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숫자 대비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장애인 구성원숫자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여기서 '국가기구'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을 관장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제6호에서 그 설치를 권고한 '효과적인 국가기구'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를 말한다. 한편, 본 지표는 정의 상 당해 국가기구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지 장애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 지표는 당해 국가기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구할 때 그들의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GEWE에서 '여성 역량강화'는 유엔의 '여성 역량강화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Women's Empowerment)에 제시된 바처럼 여성이 '기회와 자원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한을 가질권리'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거	CRPD 제4조 제3항은 당사국에게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장애여성은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듯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정부는 자신의 정책의사결정이 장애 또는 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경우에 그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여성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근거	본 지표는 장애여성의 권리 증진이라는 결과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장애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에 장애인을 포함시킨 정도를 포착하는 것인바,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참고로, 198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반권고 제6호에서 정부의고위 수준에서 설치할 것을 권고한 '효과적인 국가기구'의 기능은여성에 대한 모든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조언하는 것, 여성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것, 그리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고 그 전략과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돕는 것 등이다. 본 지표는 장애여성의 권리 증진이라는 결과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장애정책 의사결정에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을 포함시킨 정도를 포착하는 것인바, 이는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산식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기구'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 의사결정 기구의,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장애인 구성원 총 수 / 당해 기구의 구성원 총 수) * 100 그러한 국가기구가 없는 나라에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당해 국가 인적 사항에 대한 행정기록물	
주기	당해 국가기구의 구성원의 임기	
분리	본 지표는 당해 국가 정책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를 장애로 분리하여 측정한다. 또한 구성원 중 장애여성의 비율을 포 착하기 위해 성별로도 분리한다.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는 정의 상 당해 국가기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구할 때 그들의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다소 부적절하다. 장애여성의 문제에는 장애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적어도 장애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지표는 지표 2.2가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숫자를 집계하라고 명시한 것과는 달리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 코멘트 및 한계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 구성원의 숫자를 집계하라는 것으로 잘못 읽힐 소지가 있다. 본 지표는 지표 2.2처럼 장애인단체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장애인 구성원의 비율을 포착하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해 '효과적인 국가기구'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을 때 본 지표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그 국가기구에의 장애인의 참여율은 그 의미가 작을 수 있다.

####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 지표명 는 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본 지표는 한 국가의 수도 내에 위치하는 투표소 총 수 대비 투표 권이 있는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투표를 할 수 있고 자신 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기표할 수 있게 기표용 보조기구를 비치한 투표소 숫자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투표소에서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는 투표소 출입구 에 이르는 통로 및 출입구, 투표소 내의 이동, 본인 확인 데스크, 기 표소 등을 포함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기표할 수 정의 있게 조치된 투표소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기표를 할 수 있게 적절한 높이의 기표 데스크나 적절한 크 기의 내부 공간을 지닌 기표소를 의미하는 것에 더하여 혼자의 힘 으로 기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터치스크린(touchscreen)이나 점자 키패드(Braille keypad)와 같이 신기술에 근거한 기표 보조 도구 (assistive voting devices), 점자 기표용지나 큰 글자로 인쇄된 기표 용지 등 특수기표용지, 쉽게 잡을 수 있는(easy-grip) 기표도구 등 장애인을 위한 기표도구가 비치된 기표소를 의미한다.

어떤 투표소가 장애인 투표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투표소가 국가의 공식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는지 여부다. 그러한 접근성 기준은 준수될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 기준은 법이나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준수에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이 부과되어야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이러한 접근성 기준이 없다면 본 지표는 해당 국가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어떤 국가는 투표소에 대한 특정한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갖추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국가는 투표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본 래 용도와 관련한 접근성 기준만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후자는, 예를 들면 투표소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투표소 시설로서의 별도의 접근성 기준은 없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어떤 투표소가 공식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어떤 국가는 접근성 기준의 모든 항목을 다 충족시켜야만 이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어떤 국가는 그 기준들을 일정 정도 이상 충족시키면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투표소가 비밀투표를 보장하는지 여부는 상기에서 언급한 장

어떤 투표소가 비밀투표를 보장하는지 여무는 상기에서 언급한 장 애인을 위한 기표도구 또는 기표보조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그러한 것들이 한 종류라도 비치된 투표소는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일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그 어떤 기표도구를 제공받아도 혼자의 힘으로 기표를 할 수 없는바,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것이 법적·정책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용이 없다면 장애인 투표자에 대한 비밀투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 수도란 해당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지로서 각 국가의 헌법, 법률, 관습법 등이 수도로 정한 곳을 의미한다.



CRPD 제29조 가호는 당사국에 대해 장애인이 투표할 권리를 보장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협약 제29조 가호의 1은 "투표절차, 시 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 록 보장할 것"과 제29조 가호의 2는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 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조항과 동 협약 제29조 가호의 3의 관계는 보완적일 수 있 다. 후자의 조항은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 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 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기표소에 유권자인 장애인 이외에 기표 보조자가 들어가는 것은 엄 밀한 의미에서 비밀투표는 아니지만 장애인이 선택한, 그래서 기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이 기표를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비밀투 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일차적으로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기표할 수 있도록 기표용 보조기구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그 어떤 기표용 보조도구를 제공받아도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 애인에게는 그가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본 지표는 이러한 조항들이 요구하는 투표소의 접근성 및 비밀투표 의 가능성 여부를 포착하는 것으로, 투표소의 접근성 및 비밀투표 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위한 수 단인바, 따라서 본 지표는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장애인 투표자가 접근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관련 공식적인 물리 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동시에 장애인이 자신의 기 표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기표할 수 있게 기표용 도구 산식 한 가지 이상을 비치한, 국가 수도 내의 투표소 총 수 / 국가 수도 내의 투표소 총 수) \* 100

	단, 장애로 인해 그 어떤 기표도구를 제공받아도 혼자 힘으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그가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적·정책적 조치가 없는 경우, 장애인 투표자에 대한 비밀투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수도 내 위치하는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과 기표용 보조기 구의 비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물
주기	전국 단위 선거의 주기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대부분의 국가는 학교, 종교시설, 지방 관청 등 공공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고 있다. 대체로 공공시설은 민간시설보다 물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그 용도가 투표소 용도는 아니기에 장애를 가진 투표자가 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소 접근성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별도의투표소 접근성기준이 없는 정부는 그 대신 투표소로 쓰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바, 이 공공시설의접근성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시설에 임시 설치되는 투표소도 접근성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시설에 임시 설치되는 투표소도 접근성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단,투표소 접근성기준 또는 투표소로 이용되는 접근성기준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불충분할 소지는 있다.



지표명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청사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일국의 수도에 위치한 정부 청사 숫자 대비 그 중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청사 숫자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본 지표에서 정부 청사는 중앙 정부의 청사로 한정하며, 따라서 지방 정부가 수도에 두고 있는 지방 정부 청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중앙 정부에는 중앙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 중앙 정부 청사를 수도뿐만 아니라 그 근교에도 둘 수 있다. 수도 근교에 있는 중앙 정부의 청사는 수도에 있는 중앙 정부의 청사는 수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본래의 수도 이외에 행정 수도를 별도로 두고 중앙 정부의 청사를 양쪽에 분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수도 모두에 있는 중앙 정부 청사를 다고려해야 한다. 어떤 정부 청사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별도로설치된 그 자신만의 주출입구를 가져야 한다. 많은 경우 정부 청사건물은 종합청사 형태를 지니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종합청사는서 대 독립적인 정부 청사 건물로 구성되기도 한다. 종합청사 내정부 청사들이 건물 구조상 제각기 자신만의 주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한, 각각의 청사는 한 개로 집계된다. 정부 청사는 본청은 물론그 하위 청의 청사도 포함한다. 어떤 정부 청사 건물이 접근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국가의공식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는지 여부다. 그러한 접근성기준은 준수될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측정될 수 있어야한다. 접근성 기준은 법이나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정해져야 하고 준수에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이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이러한 접근성 기준이 없다면 본 지표는 해당 국가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어떤 정부 청사 건물이 공식적인 접근성 기준의 충분히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어떤 국가는 접근성 기준의 모든 항목을 다 충족시켜야만 이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어떤

국가는 그 기준들을 일정 정도 이상 충족시키면 충분히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지표에서 청사 건물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에 한 정한다. 장애인에게 물리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시설을 설치, 변경, 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건물에 접근하여 물 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수화통역 등의 인적 보조를 제공 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의 정부 청사 건물에 대한 접근성은 청사에 사법 및 행정 절차나 서비 스를 밟거나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뿐만 아니라 청 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둘 다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국 가기관에 적용되는 일국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이들 두 집단 중 어느 한 쪽을 배제한다면 해당 기준 자체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 으나 본 지표에서는 그 기준이 장애를 가진 시민만을 위한 것이어 도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을 포착하는 지 표다. 이러한 접근성의 보장은 CRPD 제9조 제1항 가호, 제9조 제2 항 가호 및 제9조 제2항 마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제9조 제2항 가호는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제9조 제2항 마호는 "대중에 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 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근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국의 접근성 기준은 이와 같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제공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협약 제9조가 대중에게 개방된, 정부 청사의 민원실과 같은 시설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약 제29조 나호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 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지표의 접근성에 장애를 가진 공무원



근거	이 공무를 담임할 수 있게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 등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근성의 제한은 일부 국가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만큼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접근권의 이행을 포착하는 본 지표는 결과지표이다.
ALAI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국가 수도 내의 정부 청사 총 수 / 국가 수도 내의 정부청사 총 수) * 100
산식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0'이다. 청사 건물이 한 개로 카운트되기 위한 요건은 '자신만의 주출입구를 가 질 것'이다.
자료 수집 및 출처	모든 중앙 정부 청사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물
주기	2~5년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의 정의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지표로 커버하는 정부 청사를 수도에 위치한 청사로 국한한 것은 한계가 있다. 수도가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 정부 청사도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접근하여 이용해야 하는바, 이들 청사의접근성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지표에서 정부 청사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으로 각국의 해당접근성 기준을 채택했는데, 일부 국가의 기준은 정부 청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할 소지가 있다. 유엔에스캅은 각국이 본 지표의 측정 결과를 보고할 때 정부 청사의 물리적접근성 기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간략히 보고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는 정부 청사에 대한 일국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장애를 가진 시민만 고려하고 장애를 가진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기준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의 접근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접근성 기준의 요건을 낮춘 것은 아·태 국가의 유관 상황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과연 각국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장애 공무원의 접근권도 보장하는 것인지, 즉 정부 청사의 민원실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에서의 물리적 접근성도 보장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유엔에스캅은 정부가 본 지표로 해당 장애인 권리 이행에서의 진척을 보고할 때 이에 사용한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장애 공무원의 접근권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기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지표명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일국의 공인된 국제공항 숫자 대비 그 중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 숫자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국제공항'에서 '공항'이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각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제공항'이란 외국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허용하며 세관·출입국관리·검역 시설을 갖춘 공항을 의미한다. 공인된 국제 공항이란 국제공항협의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 ACI)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공항들이다. 국제공항에서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는 주차에서 탑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분야에는 공항 주차장, 공항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 및 출입구, 공항 내 층간 이동 통로, 항공권 판매대,



공항 내 화장실을 포함하여 각종 편의시설, 공항 건물에서 항공기에 이르는 통로가 포함된다.

어떤 국제공항이 접근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공항이 국가의 공식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는지 여부다. 그러한 접근성 기준은 준수될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 기준은 법이나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준수에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이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이러한 접근성 기준이 없다면 본 지표는 해당 국가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어떤 국제공항이 공식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어떤 국가는 접근성 기준의 모든 항목을 다 충족시켜야만 이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어떤 국가는 그 기준들을 일정 정도 이상 충족시키면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지표에서 국제공항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에 한정한다. 장애인에게 물리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시설을 설치, 변경, 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국제공항에 접근하여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수화통역 등의 인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근거

이것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의 보장을 포착하는 지표 다. 이러한 접근성의 보장은 CRPD 제9조 제1항 가호, 제9조 제2항 가호 및 제9조 제2항 마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제9조 제2항 가 호는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 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제9조 제2항 마호는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 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국의 접근성 기준은 이 와 같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제공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의 제한은 일부 국가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만큼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접근권의 이행을 포착하는 본 지표는 결 과지표이다.
산식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 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 일국의 공인된 국제공항 총 수 / 일 국의 공인된 국제공항 총 수) * 100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0'이다.
자료 수집 및 출처	모든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물
주기	3~5년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에서 국제공항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으로 각국의 해당 접근성 기준을 채택했는데, 일부 국가의 기준은 국제공항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할 소지가 있다. 유엔에스캅은 각국이 본 지표의 측정 결과를 보고할 때 정부 청사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간략히 보고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표명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막 및 수화 통역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비상업적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 중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해 자막과 수화통역이 모두 제공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비율이다. 이는 한 공영 텔레비전 방송이 평일과 주말에 방영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총 회수대비 자막과 수화통역을 모두 제공하는 뉴스의 회수의 비율이다. 자막과 수화통역은 뉴스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제공될 수도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를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지표는 이들 방송국이 평일과주말에 방영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총 회수 대비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뉴스의 총 횟수의 비율이 된다.
근거	이것은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을 포착하는 지표다. 이러한 접근성의 보장은 CRPD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특히 제21조 라호는 당사국이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 의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다른 권리, 예를 들면 문화향수권 등의 조건 또는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또는 이행을 포착하는 지표는 과정지표 이자 결과지표다.
산식	(자막과 또는 수화통역이 모두 제공되는, 비상업적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연간 총 뉴스 프로그램 횟수 / 비상업적 공영 텔레비 전 방송국(들)의 연간 총 뉴스 프로그램 횟수) * 100



## 지표명

정의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 비율

본 지표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문서를 읽거나, 보거나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그러한 어려움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문서의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적으로 인정된 인터넷 접근성 표준인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를 충족시키는 공공 웹사이트의 비율이다.

첫 번째 지표는 측정하기 어렵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정부 기관 이 생산하는 문서의 수는 매우 많아 당해 비율의 분모가 되는 모든 종류의 공공 문서의 총 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모든 공 공 문서가 접근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지표의 공공 문 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 문서'를 정부가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고 그 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 문서 로 제한해 볼 수 있다. 정부가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는 문서는 대개 그 발간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문 서의 접근성 이용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지 표의 비율은 1년간 중앙정부가 발간하여 널리 배포한 공공 문서의 숫자 대비 장애인의 접근성·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화, 음성 변환코드의 삽입, 활자 크기의 확대, 녹음,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등의 조치가 하나 이상 적용된 공공 문서의 숫자이다. 다만 이 비율 은 정부가 생산하였으되 공중에게 널리 배포하지는 않고 그 제공을 요청한 개인에게만 제공하는 공공 문서를 배제하는 약점이 있다. 다른 대안적 비율은 정부가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서에 대해 자신의 장애로 인해 그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개인이 합리적 인 편의 차원에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 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비율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편의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 우에 한해서 제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해 비율은 중앙 정부가 생산하여 제공한 공공 문서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장 애인이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한 건수 대비 해당 요청에 대해 정부

가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한 건수이다. 이 비율은 장애인의 요청이 없어도 정부가 알아서 접근성 및 이용성을 제공한 공공 문 서의 건수를 배제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지표, 즉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터넷 접근성 표준인 WAI를 충족시키는 공공 웹사이트의 비율은, 일국의 전체 공공 웹사이트 숫자 대비 WAI 표준을 준수한 공공 웹사이트 숫자의 비율이다. 한 편 '공공 웹사이트'에서 '공공'이 의미하는 바는 다소 불분명하다. 정의 본 지표가 타깃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정부기관과 각국에서 공공기 관으로 정의된 기관들의 웹사이트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본 지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총수 대비 이들 기관의 웹사이트 중 WAI 표준을 충분히 준수한 웹사이트의 숫자 의 비율이다. 이때 '충분히'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장애인 이 큰 어려움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이면 충분한지는 각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정부의 공공 문서와 정부・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장 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정부의 각종 행정 및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이 기도 하다. 특히 최근 소위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행정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서비스를 신청하 고 이를 제공받는 추세가 점점 두드러지는바, 정부 및 준정부기관 근거 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CRPD는 제9조 및 제21조에서 이러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나호는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 등에 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9조 제2항 사 호는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제21조 가호는 공중 을 위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기술로 제공할 것을 요구

하다.



	본 지표는 과정지표일 수도 있고 결과지표일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권리일 수 있고 동시에 다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산식	1-1. (1년 간 중앙정부가 공중을 대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장애인 접근을 위한 포맷이 하나 이상 적용된 문서의 총 수 / 일 년간 중앙정부가 공중을 대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문서의 총 수) * 100
	1-2. (1년 간 중앙정부가 장애인에게서 받은, 공공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건수 / 일 년간 중앙 정부가 장애인에게서 공공 문서에 대해 접근성 제공 요청을 받은 총 건수) * 100
	2. (WAI 표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준수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총 수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 트의 총 수) * 100
자료 수집 및 출처	1. 중앙정부의 발간물 관리 대장. 또는 중앙정부가 장애인에게서 공공 문서에 대해 접근성 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한 기록
	2.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해 WAI 표준 준수를 점검한 조사 결과
주기	1년
분리	접근성이 제공된 공공 문서의 경우, 그 제공된 접근성 포맷의 유형 (점자화, 큰 글자화, 음성 녹음화, 음성변환코드 삽입, 이해하기 쉽게 작성, 대독 등)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의 비율의 측정에서 공공 문서를 중 앙정부가 생산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 문서를 배제 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공공 문서를 배제하고자 하

는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 문서의 관리가 중앙정부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의 비율의 분모가 되는 공공문서의 총수를 정부가 공중에게 널리 배포하는 공공 문서의 총수로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한 공공 문서의 총수로하는 것은 각각 공중에게 널리 배포하지 않는 공공 문서를 배제하거나 장애인의 요청과 무관하게 정부가 접근성 및 이용성을 제공한공공 문서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제 역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 비율의 측정에서 웹사이트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국한한 것은 민간기관이면서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제는 민간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성 상병학의 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자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성 상병학의 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성 상병학의 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성 상병학의 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성 상병학의 기관 의학되는 가 때문이되고 되었다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성 상병학의 기관 의학되는 가 때문이되고 되었다면서 공작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 상용학의 기관되었다면서 공작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 상용학의 기관 상용학의 기관 상용학의 기관 상용학의 기관 기관의 업과 방공학의 기관 기관의 업과 기관 기관의 업과 기관 기관의 기관 기관의 기관		
가 있다. 이러한 배제는 민간기관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	포엔트 및 한계 또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의 비율의 분모 문서의 총수를 정부가 공중에게 널리 배포하는 공공 분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한 공공 분하는 것은 각각 공중에게 널리 배포하지 않는 공공 분거나 장애인의 요청과 무관하게 정부가 접근성 및 이용 공공 문서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제 역시의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	문서의 총수로 문서의 총수로 문서를 배제하 용성을 제공한 ] 관련 데이터
그 그 그 가는 뒷게 반두하하면 작별하기가 어딘다는 잘 때투이다	공공 문서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제 역시의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정에서 웹사이트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국한한 것은 면서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비	의 관련 데이터 기트 비율의 측 은 민간기관이 배제하는 한계 - 수행하는 기

지표명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보조기구나 다른 생산품이 필요한 장애인 총 수 대비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총 수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보조기구 및 생산품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목발, 지팡이, 보행기, 자세보조기구, 척추보조기, 상지·하지 의지 등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는 안경, 저시력보조기,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점자프린터 등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는 보청기, 화상전화기, 골도전화기, 음성증폭기, 인공와우, 자막수신기 등이 있다.



	언어장애인을 위한 것으로는 인공후두, 의사소통보조기 등이 있다. 한편 한 장애인이 한 개 이상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고 이 중 일 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정확히 포 착하기 위해 보조기구별로 본 지표의 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아래 의 <표1 >은 보조기구 종류별로 필요 여부와 보유 여부를 묻는 설 문 항목의 예이다.
근거	CRPD 제4조 제1항 사호는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을 당사국의 일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20조 나호는 이동보조기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이동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서 주목할 것은 적정 비용의 기술에 근거한 보조기구와 양질의 보조기구를 강조하는 점이다. 이두 요소는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은 보조기구가 적정한 비용이 아닌, 값비싼 기술에 근거한다면 그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충분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를 보유하기 어렵다. 저질의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구그 자체에 대한 욕구는 있어도 그 질이 좋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를 보유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보조기구의 보유 여부를 측정하는 본 지표는 과정지표다. 보조기구를 보유하게 되면 이동권, 정보접근권,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보조기구를 보유한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결과지표는 아니다.
산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특정 보조기구나 다른 생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총 수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 특정 보 조기구나 다른 생산품이 필요한 장애인 총 수) * 100

자료 수집 및 출처	다양한 보조기구 및 생산품목별로 응답자의 필요 여부 및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는 특정 목적의 서베이.
주기	3~5년
분리	본 지표의 비율은 성으로 분리를 하면 보조기구의 보유 여부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사이의 갭을 포착할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특정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는 그에 대한 효능을 알 경우에만 생긴다.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는 보조기구가 창출한다. 다른 말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다양한 보조기구가 가용한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욕구하는 보조기구의 범위는 넓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그 범위는 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지표의 국제적 비교는 다소 어려울 소지가 있다.이러한 문제는 서베이 조사표에 <표 1>과 같이 조사할 보조기구항목들을 열거할 때 어떤 보조기구들을 열거한 것인지와 연결된다.어떤 나라에서 가용한 보조기구의 품목은 제한적인데,이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가용한 모든 보조기구 품목을 조사표에 열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조사표에 해당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가용한 보조기구만을 열거하되 먼저 응답자가 해당보조기구에 대해알고 있는지 조사한 다음알고 있는 보조기구에 한해서만 욕구 조사와 보유 여부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있다.



#### <표 1>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 및 보유 여부

구분	재활보조기구 종류	필요 여부	소지 여부	구분	재활보조기구 종류	필요 여부	소지 여부
	01)상지의지	1	2	언어	01)인공후두(성대)	1	2
	02)하지의지	1	2	장애	02)의사소통보조기	1	2
	03)척추보조기	1	2	(4)	03)기타 ( )	1	2
	04)상지보조기	1	2	지적	01)스위치	1	2
	05)하지보조기	1	2	및 자폐성	02)터치모니터	1	2
TI =11 \(\tau\)	06)정형외과용 구두	1	2	장애(5)	03)기타( )	1	2
지체장애 및	07)지팡이	1	2	신장 장애	01)복막투석기구	1	2
뇌병변 장	08)목발	1	2	장애 (6)	02)기타 ( )	(1)	(2)
에 (1)	09)보행기	1	2	(0)			
(1)	10)자세보조기구	1	2	호흡기 장애	호흡01)산소발생기치료용구02)인공호흡기	1	2
	11)전동휠체어	1	2	(7)	03)기타( )	(1)	(2)
	12)수동휠체어	1	2		03/214( )		٧
	13)전동스쿠터	1	2	안면 장애	01)압력옷	1	2
	14)기타( )	1	2	상애 (8)	02)기타( )	1	2
	01)안경(콘텍트렌즈)	1	2		01)장루주머니	1	2
	02)저시력보조기	1	2	장루 <b>·</b> 요루	02)피부보호판	1	2
	03)시각장애인용 휜지팡이	1	2	장애(9)	03)기타( )	1	2
	04)의안	1	2		03/2   -1( )		<u> </u>
	05)스크린 리더	1	2		호흡 01)산소발생기	1	2
시각 장애	06)화면확대기	1	2		보조기 02)인공호흡기	1	2
(2)	07)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	2	-	,		
	08)음성 손목/탁상시계	1	2	_	03)욕창방지용매트	1	2
	09)시각장애인용 안내견	1	2		04)욕창방지용방석	1	2
	10)점자프린터	1	2		05)기저귀매트	1	2
	11)화면해설기	1	2		06)목욕 의자	1	2
	12)기타( )	1	2	저훼	, , , , , ,		
	01)보청기	1	2	전체 (10)	07)특수 키보드	1	2
청각 장애 (3)	02)화상전화기	1	2		08)특수 마우스	1	2
	03)골도전화기	1	2		09)스위치, 음성인식장치	1	2
	04)문자전화기 05)문자송수신기	1	2				
	06)음성증폭기	1	2		10)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1	2
	07)인공와우	1	2		11) 환경제어장치	1	2
	08)자막수신기	1	2		12) 이동변기	1	2
	09)기타( )	1	2		13)기타( )	1	2
L		1.0	J	<u> </u>	1	1-	

지표명	4.1 정부 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정의	본 지표의 완전한 이름은 지난 1년 동안의 '정부 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장애인의 비율(rate)에 대한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의 비율(rate)의 비율(ratio)'이다. '정부 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 차원의 건강보험과 사회부조 차원의 건강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비기여적인 것으로, 병원비 감면 혜택, 모성 및 어린이 건강 및 영양 지원, 에이즈 환자에 대한의료급여, 재활 프로그램과 같이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참고로, 건강보험과 건강 지원은 각각 아래 표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컬럼에 속한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개정 사회적 보호 지표"(2011)(The Revised Social Protection Index: methodology and handbook)에서 사회적 보호를 크게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건강보험과 건강 지원이 본 지표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Social Insurance includes	Social Assistance includes	Labor Market Programs include
	PEN (Pensions) HI (Health Insurance) UB (Unemployment Benefits) OSI (Other Social Insurance)	AE (Assistance for the Elderly) HA (Health Assistance) CP (Child Protection Programs DA (Disaster Pelief and Assistance) OSA (Other Social Assistance)	LMP (Labor Market programs only)
근거	CRPD 제25조 가호는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건강 지원과 건강보험은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무상 건강관리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에 각각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은 기여적인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이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회부조 차원의 건강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그러한 사각지대에 얼마나 놓여 있는지 측정한다. 한편 사회부조 차원의 건강 지원은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CRPD 제28조 제2항나호가 요구하는 것이다. 본 지표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사회보장권의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결과지표다.
산식	(지난 1년 동안 정부 지원의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 총수 / 장애인 총수) / (지난 1년 동안 정부 지원의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장애인 총수 / 비장애인 총수)
자료 수집 및 출처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서비스 관련 행정 통계가 본 지표의 데이터 출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건강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개 장애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소지가 있다. 또 다른 데이터 출처는 장애 변수를 포함시킨 국민생활실태조사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urvey: LSMS)나 인구 및 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 형태의 전국 조사이다.
주기	3~5년
분리	정부 지원 의료 보건 서비스의 수급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간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성으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그 서 비스가 건강보험인지 아니면 건강 지원인지를 분리해 볼 수 있다.

	본 지표에서 한 개인이 사회보험 차원의 건강보험과 사회부조 차원
	의 건강 지원 프로그램 둘 중 어느 하나를 받거나 또는 그 둘을 모두
	받아도, 똑같이 1명의 이용자로 집계된다. 따라서, 사회보험 차원의
코멘트 및	건강보험과 사회부조 차원의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비장
한계	애인 수급 비율 대비 장애인 수급 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지표는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충분하게 수급
	되는지는 측정하지 않고 단지 그 수급 여부만 측정하는 한계가 있다.

지표명	4.2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등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 인의 수혜 범위
정의	본 지표는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사회보험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실제로 커버된 비율, 즉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체 인구 대비 이를 이용한 장애인 총 수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또는 이 비율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를 전체 장애인 수로 대체할 수도 있다. 본 지표에 의해 커버되는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지표 4.1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로서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정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보호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사회적 보호는 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영역은 고령, 유족, 무능력 관련,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등이다.8) 이 중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지표 1.3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sup>8)</sup> 이 정책 영역의 목록은 ILO, 2010/11,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p. 21 참조.



	■■■ II. 인천전략 핵심지표별 메타데이터스 jogywww.www.
	상기 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퇴직연금, 실업급여, 고용상해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고령자 지원, 아동 지원, 가족급여, 현금·현물 이전, 조세감면을 포함하는 각종 감면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근거	CRPD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지표는 장애인의 사회보장권의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다.
산식	1.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 총수 /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체 인구수) * 100  2.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보호
자료 수집 및 출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 총수 / 장애인 총수) * 100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관련 행정 통계가 본 지표의 데이 터 출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개 장애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소지가 있다. 또 다른 데이터 출처는 장애 변수를 포함시킨 국민생활실태조사 형태의 전국 조사이다.
주기	3~5년
분리	정부 지원의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서비스의 수급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간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성으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그 서비스가 사회보험인지 아니면 사회부조인지를 분리 해 볼 수 있다.

####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은데,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모두 다 커버하는 본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본 지표에서 한 개인이 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수급해도 또는 여러 사회적 프로그램을 수급해도 모두 똑같이 1명의 이용자로 집 계된다. 따라서 본 지표는 정부가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지는 못한다. 또한 본 지표는 사회적 보호 서비스가 얼마나 충분하게 수급되는지 코멘트 및 는 측정하지 않고 단지 그 수급 여부만 측정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한계 로, 본 지표에서 '수혜 범위'라는 용어는 다양한 차원을 가질 수 있 다. 수혜 범위는 법에 규정된 법적 수혜 범위와 이것이 실제로 이행 된 결과로서 실제 수혜 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수혜 범위는 범주(급부의 범위(숫자) 및 유형), 정도(수혜받는 사람의 백분율), 그리고 수준(수혜 범위의 적절성) 등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를 지닌 다.9) 본 지표는 이러한 것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정도'만을 포착한다.

지표명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
정의	본 지표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 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 훈련, 주거지원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포착한다. 그리고 그 가용성으로서 당해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 기관 수,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종류, 투여되는 연간 정부예산 총액, 그리고 주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연간실제 이용자 총 수 또는 연간 이용 총 건수를 측정한다.

<sup>9)</sup> ILO, 2010/11,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p. 22.



근거	CRPD 제19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19조 나호는 그 구체적인 조치로 활동보조,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본 지표는 그러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 제공 및 의뢰 등과 같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전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존재, 그에 대한 예산, 그 이용자 수를 측정하는바, 이는 과정지표다. 이 영역에서 결과지표의 예는 실제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숫자다.
산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 상담, 권익옹호, 정보 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 훈련, 주거서비 스,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 기관 수,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 그램의 전형적인 종류, 투여되는 연간 정부예산 총액, 그리고 활동 보조 등 주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연간 실제 이용자 총 수 또 는 연간 이용 총 건수(활동보조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은 이용 건수(이용자 연 인원 수)를 집계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행정 통계나 특수 목적의 전 국 조사
주기	행정 통계의 경우는 1년, 전국 조사는 3~5년이다.
분리	프로그램 이용자 수 등의 데이터를 성과 장애유형, 그리고 서비스 유형으로 분리한다. 장애유형별로 분리하는 이유는 자립생활을 위 한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자립생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에서 '가용성'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다. 단순히 이것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본 지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떤 서비스의 가용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하부구조와 인력,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이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10) 본 지표에서의 '가용성'은 이 중 하부구조와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

#### 지표명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수 본 지표는 국가로부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취학 전 연령대의 아동의 숫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공식적 취학 전 연령대는 0~6세이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이 는 각국이 취학 전 연령으로 공식적으로 간주하는 연령대로 한다. 조기개입 서비스는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된 아동에게 이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이차적 장애 발생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의료나 재활치료, 정의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중 어느 하나 라도 받은 경우에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조기 개입은 조기발견을 전제로 한다. 어떤 아동이 발달 지체를 보이거 나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조기발견이다. 조기발 견 없는 조기개입은 조기개입으로 볼 수 없다. 국가가 조기개입 서 비스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sup>10)</sup> WHO, 2012. Measuring service availability and readiness: a health facility assessment methodology for monitoring health system strengthening 참조.



	이 숫자는 두 가지일 수 있다. 1) 지표 측정 시점 전 회계연도 (1년) 동안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취학 전 아동의 숫자. 2) 지표 측정 시점에서 과거 한 가지 이상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취학 전 아동의 숫자.
근거	개인이 영유아기에 물리적·정서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경험과 자극은 이후 인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 점은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게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이들 아동에게 좀 더 중요한 근거를 지닌다. 영유아기에 이들에게 그러한 경험과 자극이 제공될 경우 이들의지체된 또는 지체될 발달을 촉진하고 이차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RPD 제25조 나호는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본 지표는 지체된 또는 지체될 발달을 촉진하고 이차적 장애를 예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수단인바, 과정지표이다.
산식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취학 전 아동의 숫자는 두 가지일 수 있고, 따라서 산식도 두 가지일 수 있다.  1) 지표 측정 시점 전 회계연도 (1년) 동안 직접 국가로부터 또는 국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으로부터 조기개입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의 총 수  2) 지표 측정 시점에서 카운트된 것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국가에 의해 민간기관에 위탁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공식적인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의 총 수
자료 수집 및 출처	상기 산식에 따라 자료 출처 또한 두 가지이다.  1) 지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조기개입 서비스 실적에 관한 기록물  2) 국가의 조기개입 서비스 수혜에 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는 특정 목적의 서베이

	통상적으로 첫 번째 출처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아동의 연인원 수,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만을 알려줄 소지가 있다.
주기	상기 1)의 출처의 경우 1년, 2)의 출처의 경우 3~5년
분리	연령, 장애유형, 성별로 분리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절대 숫자를 포착함으로써 당해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비율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그 비율의 분모인 어떤 장애아동이 조기개입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지표는 과정지표인 관계로 조기개입 서비스의 효과를 포착하지는 못한다. 또한 언어치료와 같은 일부 조기개입 서비스는 그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어떤 조기개입 서비스는 그효과에 대한 확증된 증거 없이 제공될 소지가 있어 그효과를 파악하기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상당수의 장애아동들은 여러 가지 조기개입 서비스를 필요로함에 도, 상기 지표 정의에서 장애아동이 한 가지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아도 이를 받은 것으로 집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개입서비스 항목을 열거하고 항목별로 이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제공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표명	5.2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11)
정의	본 지표는 현재의 또는 지난 학년도에 초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 인구의 백분율로서 표시되는, 초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총 장애아동 숫자이다. 초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장애아동 총 숫자를 집계할 때 이들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처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취학률을 총취학율(Gross Enrolment Ration: GER)이라 부른다. 한편, 본 지표의 원래 취지가 교육에서의 장애아동의 불평등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본 지표를 초등교육기관 취학율에서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ratio)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초등교육'이란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97)에 따라 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수학에 대한 건전한 기초 교육과 역사, 지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음악 등의 다른 주제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제공하도록 한 단위나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근거	본 지표는 모든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초등교육에서 장애아동이 배제되는 것을 금지하는 CRPD 제24조 제2항 가호의 준수 정도를 측정한다. 동조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 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4조 제2항 나호~마호는 장애아동 초등교육이나중등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조치로 합리적인 편의 제공, 개별화된 지원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sup>11) &</sup>lt;a href="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a> .1\_EN.pdf를 참고하여 작성.

취학률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본 지표는 취학 중인 장애아 동 총 숫자를 카운트할 때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GER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ER에 대비되는 것으로는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 NER)이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초등교육 학령기의 (장애)아동 인구수 대비 초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아동 중 공식적인 초등학교 학령기의 (장애)아동 총 수다. 이처럼 NER은 그 분자에 해당하는 실제 취학 중인 아동 수를 구할 때 공식적인 학령기를 적용한다. GER은 공식적인 학령기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초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모든 아동 수를 그 분자로 삼는다. GER은 공식적인 취학연령보다 일찍 또는 늦게 초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같은 학년을 반복하는 아동들을 포착하지 못한다. 장애아동은 같은 연령의 비장애아동보다 늦게취학하거나 학년을 반복할 소지가 크다.

초등교육 취학율에서의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얼마나 덜 교육권을 향유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다. 이 비율은 협약 제24조 제2항 나호~마호가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의무초등교육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비롯한 각종 조치의 산물이다.

### 산식

1.장애아동의 초등교육에서의 GER = ((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초 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총 장애아동 숫자)/(현재 또는 지난 학년 도의 초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연령의 장 애아동 인구)) \* 100

2.초등교육 취학율에서의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 = (장애아동의 초등교육에서의 GER) / (비장애아동의 초등교육에서의 GER) 의 GER)



자료 수집 및 출처	본 지표의 취학률은 장애아동임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 개발된 방법 론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다중지표군조사 (Mu I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와 같은 전국 가구 조사 등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12) 또한 이는 국내 교육 관련 행정 통계에서도 획득 될 수 있다.
주기	1~5년. 국내 행정 통계는 매년 획득될 수 있다. 전국 가구 조사의 주기는 약 3~5년이다.
분리	본 지표는 주류 취학률 데이터를 장애와 연령으로 분리함으로써 측정된다. 이 데이터는 장애소년과 장애소녀 간의 교육 격차를 포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할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는 NER이 아닌 GER을 사용하는바, 따라서 장애아동의 학령기보다 늦게 취학하고 늦게 졸업하며 학년을 반복하는 등의, 장애아동의 불리한 상황을 포착하지 못한다. 참고로, MDGs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는 GER이 아닌 NER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취학률은 취학 아동의 숫자가 과도하게 보고되는 등의 문제나 행정 기록으로부터 도출된 관련 국내 데이터가 ISCED97의 동일한 분류에기초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거나 국제 비교가 어려울 소지가 있다.13)

<sup>12)</sup> Peer review of the ESCAP draft Guidebook on the Incheon Strategy Indicators at the EGM on Effective Data Generation for the Incheon Strategy Indicators, Bangkok, 6-7 November 2013, p.26.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구조사 및 다른 일국적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nex 2. (http://mdgs.un.org/unsd/mdg/Resources/Attach/Indicators/HandbookEnglish.pdf) 참고.

<sup>13)</sup>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 17. (http://mdgs.un.org/unsd/mdg/Resources/Attach/Indicators/HandbookEnglish.pdf) 참고.

지표명	5.3 장애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 <sup>14)</sup>
정의	본 지표는 현재의 또는 지난 학년도에 중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 인구의 백분율로서 표시되는, 중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총 장애아동 숫자이다. 한편, 본 지표의 원래 취지가 교육에서의 장애아동의 불평등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본 지표를 중등교육기관 취학율에서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ratio)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중등교육'은 ISCED97에 의거, 하급 중등교육과 상급 중등교육으로나누어진다. 하급 중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초등교육 수준의 기초 프로그램을 계속하되 주제 영역별로 좀 더 전문적인 교사를 요하는, 좀 더 주제 집중적 교육을 하도록 설계된다. 상급 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은 더욱 더 주제별로 조직되며 교사는 좀 더 높은 주제 특정적인 자격을 요한다.
근거	상기의 지표 5.2와 같다.
산식	1. 장애아동의 중등교육에서의 GER = ((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중등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총 장애아동 숫자)/(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의 중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 인구)) * 100 2. 중등교육 취학율에서의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비율 = (장애아동의 중등교육에서의 GER) / (비장애아동의 중등교육에서의 GER)
자료 수집 및 출처	상기의 지표 5.2와 같다.
주기	상기의 지표 5.2와 같다.
분리	상기의 지표 5.2와 같다.
코멘트 및 한계	상기의 지표 5.2와 같다.

<sup>14) &</sup>lt;a href="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a> <a href="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a> <a href="http://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31/2012/22\_MDG\_Handbook\_2.1-3</a>



####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지표명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본 지표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GEWE)만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이를 그 목표의 하나로 하는 현행의 국가행동계획에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참여 를 증진하는 내용, 즉 장애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를 가리킨다. 이 숫자는 각국이 본 지표를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유엔 에스캅에 보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유엔에스캅이 집계한다. GEWE에서 '여성 역량강화'는 유엔의 '여성 역량강화 가이드라 인'(Guidelines on Women's Empowerment)에15) 제시된 바처럼 여 성이 '기회와 자원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한을 가 질 권리'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 말하는 행동계획은 GEWE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목 표, 이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계획, 목표 이행의 주체, 이행 에 필요한 예산의 소스, 이행 결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포함하 정의 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본 지표상 의 행동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동계획이 없는 국가는 본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이 행동계획은 오 로지 GEWE에 관한 행동계획이거나 그 안에 GEWE에 관한 행동계 획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행동계획일 수 있다. GEWE에 관한 행동계획에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의 참여를 증진하 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함은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한 GEWE에 관 한 행동계획에 장애로 인해 권리의 향유가 어려운 장애여성 및 장 애소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즉 장애포괄적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지표상의 GEWE에 관한 행동 계획은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 특정적인 GEWE에 관한 행동계획은 아니다. 후 자는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를 포함'하는 GEWE에 관한 행동계획

<sup>15)</sup>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CPD Programme of Action, Guidelines on Women's Empowerment.

정의	이 아니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를 위한' GEWE에 관한 행동계획이다. 한편, GEWE에 관한 행동계획에 장애포괄적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이를 'GEWE에 관한 행동계획에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슈가될 수 있다. 그 포함 '정도'의 기준으로, 최소한 '여성의 고용과 교육, 그리고 건강 영역에서 장애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근거	CRPD 제6조 제2항은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여성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성의 역량강화는 5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상기에서 적시한 3개이외에 나머지 두 구성요소는 '여성의 자존감',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더정의로운 사회 및 경제 질서를 창출하기위해 사회변동의 방향에 영향을 낄수 있는 여성의 능력'이다. GEWE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은 협약 제6조 제2항의 여성의 권리를 구현하기위한 것이다. 본지표는 GEWE에 관한 행동계획에 장애를 고려하겠다는 계획, 즉약속에 해당하는바, 이는 구조지표로 볼수 있다.
산식	GEWE만을 목표로 하는 또는 이를 그 목표의 하나로 하는 현행의 국가행동계획에 고용, 교육과 건강을 포함한 영역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 즉 장애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시 킨 국가의 수
자료 수집 및 출처	각국이 GEWE에 관한 행동계획에 어떤 장애포괄적 내용을 포함시 켰는지를 고용, 교육과 건강을 포함한 영역별로 간략히 적시하여 유엔에스캅에 보고한 자료
주기	본 지표는 GEWE에 관한 행동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갱신할 때 측정할 수 있는바, 그 측정 주기는 3~10년이다.



분리	본 지표는 주류 GEWE에 관한 행동계획의 내용을 장애로 분리하여 측정한다. 이 행동계획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해 달리 고려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코멘트 및	본 지표는 GEWE에 관한 행동계획에 장애포괄적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이를 장애포괄적인 행동계획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상기에서는 계획이 다루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고용, 교육 및 건강 영역을 커버하는 장애포괄적인 행동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그 계획이 장애포괄적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임의적인 기준이다.
한계	본 지표는 장애포괄적인 계획의 규모를 포착하지 않는바, 사소한 내용의 장애포괄적인 것과 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의 장애포괄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표명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비 율 <sup>16)</sup>
정의	본 지표는 국가 의회의 전체 의석 수 또는 의회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의 전체 의석 수 중 장애여성의 의석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한편, 상기의 비율로는 국가입법기구의 의석에서의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사이의 갭과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사이의 갭을 포착할 수 없는바, 추가적으로 전체 여성 의석에서 장애여성 의석이 차지하는 백분율과 전체 장애인 의석에서 장애여성 의석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sup>16)</sup> 이는 새천년행동계획(MDGs) 지표의 하나인 '국가의회에서 여성이 점유하는 의석의 비율'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본 지표를 포함하여 MDGs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는 http://mdgs.un.org/unsd/mdg/Metadata.aspx 참조.

	국가 의회들은 단원 또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국제 비교를 위해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만을 본 지표의 측정에서 고려한다. 일반적인국가 의회는 아니나 국제 의회 연합(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 가입한 국가 기구는 본 지표의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CRPD 제29조 가호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제29조 나호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협약 제6조 제1항은 장애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본 지표는 협약의 당해 조항들이보장하고자 하는 장애여성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이 정치적 참여의 핵심이라 할 국가입법기구에서 보장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국가입법기구에 대한 참여 자체는 공무담임권 및 정치 참여권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기본권을 측정하는 본 지표는 결과지표에 해당한다.
산식	1.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수 / 국가입법기구의 총 의석수) * 100 2.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수 / 국가입법기구에서 여성의 의석 총수) * 100 3.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수 /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 의석 총수) * 100 단, 국가 의회가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만 대상으로 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국가입법기구 사무처가 관리하는 국가입법기구 구성원 신상에 대한 자료. 만약 이러한 자료에 국가입법기구의 구성원이 장애인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입법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 여부를 묻는 간략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본 지표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주기	국가입법기구 구성원이 전부 또는 일부 교체되는 주기
분리	본 지표는 국가입법기구의 의석 수를 장애와 성으로 분리함으로써 측정된다.
코멘트 및 한계	지표 2.1과 유사

지표명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정의	본 지표의 완전한 이름은 지난 한 해 또는 지난 정부 예산 회기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공한 성 및 생식 보건(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RH) 서비스를 이용한 비장애인 소녀 및 여성의 비율(rate)에 대한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rate)의 비율(ratio)'이다. 장애소녀에는 12세 이상만 포함시킨다. SRH 서비스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한 출산 및 산후관리; 불임 예방 및 치료, 낙태 예방 및 낙태 후유증 관리; 생식요로감염 치료; 성병 및 HIV/AIDS 예방 및 치료, 인간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카운슬링 제공.17)

<sup>17)</sup> 이 목록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ICPD) Programme of Action Para. 7.6에 나열된 9개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상기 목록에서 빠진 2개 항목은 성폭력 예방 등과 관련한 서비스다.

CRPD 제25조 가호는 당사국에게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항은 정부의 성적, 생식적 보건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가 비장애인과동등하게 비장애인에게도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장애인에게는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본지표는 SRH 서비스가 비장애 여성 및 소녀에게 제공되는 비율과장애 여성 및 소녀에게 제공되는 비율과장애 여성 및 소녀에게 제공되는 비율의 간극을 포착함으로써 당해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단, 본 지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SRH 서비스도 포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SRH 서비스만을 타깃으로 하는 당해 CRPD 조항과는 다소 다르다.

근거

한편, 본 지표는 SRH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및 소녀를 타깃으로 함으로써 SRH 서비스가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서비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타깃으로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General Comment No. 14 (2000) on the right to health adopted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르면, "생식적 건강은 여성과 남성이 생식을 할지를, 한다면 언제 하는지를 결정할 자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그 비용이 감당할만하며 수용될 수 있는 가족계획 방법에 접근할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적절한 건강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지표는 장애 여성 및 소녀의 SRH의 수준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는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보여 주는 과정지표다.



#### 산식

(지난 1년 또는 정부예산회기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공한 SRH 서비스를 이용한 12세 이상 장애여성 총수 / 12세 이상 장애여성 총수) / (지난 1년 또는 정부예산회기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공한 SRH 서비스를 이용한 12세 이상 비장애여성 총수 / 12세 이상 비장애여성 총수)

이용 인원수는 실 인원수일 수 있고 연인원수일 수도 있다.

1. 여성에게 SRH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행정 통계:

SRH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통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집계 될 수 있다. 하나는 실 이용자 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개인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자 수를 한 명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이용자 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동일 개인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 수를 한 명이 아니라 제공받은 서비스횟수로 집계하는 것이다. 본 지표에서 이 두 가지 집계 방식은 모두 인정될 필요가 있다.

#### 자료 수집 및 출처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SRH 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는 많은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으나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SRH 서비스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개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SRH 서비스의일부가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바, 관련 보험 통계가 장애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보험이 커버하고있는 SRH 서비스는 전체 SRH 서비스의 일부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 특정 목적으로 3~5년 주기로 조사되는 서베이: 이 서베이는 장애여 성 및 비장애여성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

주기	1년 또는 3~5년
분리	주류 SRH 서비스 데이터는 당연히 장애로 분리해야 하고, SRH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연령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코멘트 및 한계	일부 SRH 서비스들은 분리되어서 제공되기보다는 분리되지 않고하나로 묶여서 제공될 소지가 있다. 이처럼 하나의 세트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되는데, 본 지표는 이러한 사정을 포착하지는 못한다. 또한 본 지표는, 서비스의 규모도 포착하지 못한다. 큰 규모의 SRH 서비스건 작은 규모의 SRH 서비스건 간에이를 한 번 이용하면 이용자 1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서베이에서 SRH 서비스 항목을 열거하고 항목별로그에 대한 욕구와 이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지표는 시민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SRH 서비스도 그 타깃으로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행정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굳이 시민사회의 SRH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싶다면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SRH 서비스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표명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정의	본 지표는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즉 그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의 현행 프로그램의 수를 말한다.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일차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여성폭력과 이차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드러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결합된 것으로, 물리적, 성적, 심리적·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착취를 수반하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형태는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스토킹, 성희롱,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여성폭력의 형태들을 포함한다.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용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 또는 조치일 수 있고, 장애 특정적인 프로그램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장애를 고려한 내용의 범위가 크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 숫자와 지원된 예산액 등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되어 집계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현행 프로그램'이라 함은 조사 시점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포함한다. '유관 기관'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한 이유는 그렇지 않은 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각종 인 식개선 캠페인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는 법과 그에 내포된 구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캠페인, 당해 폭력의 비용납에 대한 인식을 높 이는 캠페인, 여성 및 장애인의 권리의 침해로서 해당 폭력에 대한 커뮤니티의 감수성을 민감하게 하는 태도 변화 캠페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기자 등 미 디어 종사자의 감수성을 강화하는 훈련이나 상훈 프로그램, 당해 폭력에 반대하는 저명인사 등의 발언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 등이 있다. 그밖에, 학교, 직장, 군대와 같은 주요한 세팅에서 이 루어지는 당해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 관련 프로그 램에는 학교 교과 과정에 당해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조치, 관련 교보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당해 폭력 예방 이 벤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이나 소년, 부모, 당해 폭력 에 노출된 위기의 어린이 및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인식 및 행동 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편,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당해 폭력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당해 폭력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처하거나 이들의 안전, 보호 및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과정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및 비법적 개입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밖에, 당해 폭력의 위험을 사례별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18) 참고로, 당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 및 지원 프로그램도 대응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표 6.5가 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sup>18)</sup> UN Women(2012).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3.1.3 참조.



근거	CRPD 제16조는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는 조치는 물론 그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소하는 조치와, 그 피해자의 회복, 재활 및 사회 재통합을 위한 대응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협약동 조항은 이러한 조치들이 장애에 민감할 것은 물론 연령과 성에도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항은 이처럼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제거하는 조치가 성에 민감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장애남성에 대한 착취, 폭력 및학대의 금지도 커버하고 있다. 이에 비해본 지표는 장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지표는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는 과정지표에 해당한다.
산식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스토킹, 성 희롱,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및 이들의 재정 지원 을 받는 유관 기관의 현행 프로그램의 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 용의 경우, 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장애 특정적인 여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이 용자 숫자와 지원된 예산액 등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되어 집계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또는 정부 지원의 서비 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자료
주기	1년
분리	주류 여성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장애로 분리하여 카 운트한다.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해 특정적인 폭력 프로그램 및 서 비스는 그것이 성년 여성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소녀에 대한 것인 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으로 분리할 수 있다.

# 코멘트 및 한계

여성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숫자를 셀 때 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로 셀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세부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인 경우에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셀지 아니면 그 세부 요소들을 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셀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규모가 다를 텐데 그러한 규모와 무관하게 그 숫자만을 세는 것은 본 지표로써 포착하고자 하는 바를 많이 놓칠소지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지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그 수혜 대상의 범위 등을 포착하지 못한다.

###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 재활 지표명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수 본 지표는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 에 대한 돌봄, 지원, 역량강화 등을 제공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 부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의 현행 프로그램의 수를 말하다.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일차적으로는 남성 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여성폭력과 이차적 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드러내는 정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결합된 것으로, 물리적, 성적, 심리적·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착취를 수반하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 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형태는 가정폭력, 성폭력, 부 부강간, 스토킹, 성희롱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여성폭력의 형태들 을 포함하다.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를 돌보고, 지원하며, 이들 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에는 피해자 및 이들 의 동반 어린이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응급 및 단기 주거를



정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동안 질 높은 카운슬링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 주 내내 하루 24시간 정보, 옹호, 지원 및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무료 전화 항라인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이에 포함된다. 그밖에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상담 및 법정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폭력에 상처받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이들의 직업적·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 또는 조치일 수 있고, 장애 특정적인 프로그램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장애를 특정하게 고려한 내용의 범위가 크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카운트한다. 후자의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 숫자와 지원된 예산액 등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되어 집계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현행 프로그램'이라 함은 조사 시점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포함한다. '유관 기관'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한 이유는 그렇지 않은 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지표 6.5와 유사
산식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스토킹, 성 희롱,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및 이들의 재정 지원 을 받는 유관 기관의 현행 프로그램의 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 용의 경우, 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장애 특정적인 여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이 용자 숫자와 지원된 예산액 등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되어 집계 및 관리되는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계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또는 정부 지원의 서비 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자료
주기	1년
분리	지표 6.5와 유사
코멘트 및 한계	지표 6.5와 유사

지표명	7.1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가용성
정의	본 지표는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가 국가의 재난 위험 감소 계획 또는 프로그램들의 수립에 참여하였는지 또한 그 계획 또는 프로그램들이 재난에 대한 장애인들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그들의 관련 욕구를 고려했는지, 고려했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했는지를 포착한다. 먼저 국가의 재난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차원의 것으로 국한한다. 이처럼 국한하는 이유는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될수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것과 그 내용이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그것들을 통합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일국의 재난 위험 감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가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여러 우선 영역들을 포함할수 있다.19) 이 영역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수 있다. 모든 위험요소들에 대한 취약성 및 노출을 줄이고 자신들의 위험을 줄이는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요소를 피하고 그것들의 잠재적 타격을 줄이는 예방과 경감, 재난의 부정적 충격을 예측하고 극복하며 그로부터 회복하는 커뮤니티의 역량을 구축·강화하는 재난 대비 준비, 재난 기간 동안이나 그 직후에 수용할 만한 표준에 근거하여 이재민의

<sup>19)</sup> 이는 필리핀의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lan을 참고.



정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 생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난 대응, 그리고 타격받은 커뮤니티의 시설물, 생활 여건 및 조직 역량을 복구하고 개선하는 재건과 복구. 본 지표는 우선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는지 여부를 포착하고, 나아가 이들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들의 재난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그들의 관련 욕구를 포함시킨 부분이 있는지 포착한다. 장애포괄적인 국가 DRR 계획의 가용성은 다음과 같이 포착한다. 우선 하나의 포괄적인 주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은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역 또는 그 세부영역을 모두 열거하고, 포괄적인 계획 또는 프로그램 대신에 별개의 여러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모두 열거하고, 이들 열거된 항목별로 이들을 수립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관여했는지 적시하며, 마지막으로 이들 열거된 계획 또는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용들을 간략히 적시한다. 참고로, 만약 장애 특정적인 국가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별도로 열거하고 그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여부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근거	"재난 위험 감소란 재난의 원인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는 개념과 실천을 말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감소된 노출, 사람과 재산의 감소된 취약성, 토지와 환경의 현명한 관리, 해로운 사건에 대한 개선된대응 등이 포함된다."20)  CRPD 제11조는 이러한 재난 위험 감소 실천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즉 장애포괄적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지표는 재난에 대비해서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해서 DRR 계획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는바, 구조지표로 볼 수 있다.

<sup>20)</sup> UN plan of ac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

산식	하나의 포괄적인 주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 중 그 세부영역들의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했는지 여부와 그세부영역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용을 적시한다. 개별적인 여러 주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각각의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는지여부와 그 개별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한 내용을 적시한다. 장애 특정적인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수립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여했는지 여부와 장애 특정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행동계획이나 매뉴얼 형태의 DRR 계획 및 프로그램
주기	DRR 계획 및 프로그램을 새로 수립하거나 갱신할 때 측정한다.
분리	주류 DRR 계획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장애로 분리한다. 그리고 이를 추가적으로 성이나 연령으로 분리할 수 있다. 성과 연령으로 추가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DRR 계획 및 프로그램이 장애인 중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별도로 고려하는지 포착할 수 있게해준다.
코멘트 및 한계	본 지표는 DRR 계획 및 프로그램의 장애포괄 여부만 포착할 뿐 그것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재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난 대비 준비를 하고, 재난에 대응하게 해주는지 등을 포착하지는 못한다. 한편, 본 지표에서 '가용성'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다. 또한 DRR 계획 및 프로그램의 범주도 불명확하다. 이러한 지표는 측정하기가 어렵다.



지표명	7.2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포괄적인 훈련의 가용성
정의	본 지표는 재난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서비스 인력에 대해 실시하는 장애포괄적인 훈련, 즉 DRR 서비스 제공 시 재난에 대한 장애인들의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 그들의 관련 욕구를 고려하게 하는 훈련의 여부와 그 대상 및 내용을 포착하는 것이다. 국가의 DRR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서비스 인력은 국가의 여러 DRR 영역들, 예를 들면, 재난의 예방과 경감, 재난 대비 준비, 재난 대용, 재건과 복구 등의 영역에서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인력에는 공무원, 소방관, 의료진, 구호기관 인력,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력에 대한 훈련 방식은 강의식 훈련과 현장 훈련을 병행한다. 장애포괄적인 DRR 훈련의 가용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 또는 매뉴얼이 장애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조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될 경우, 본 지표가 포착하고자 하는 바는 적절히 달성될 것이다. 먼저 지난 1~2년 동안 국가 DRR 서비스 인력의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교재 또는 매뉴얼을 살펴보고, 그 중 장애를 고려한 내용이들어 있는 해당 교재 또는 매뉴얼의 제목과 그 고려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며, 그러한 장애포괄적 교재 및 매뉴얼의 사용 대상이되는 서비스 인력의 유형을 적시한다. 또한 장애 특정적인 국가 DRR 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면, 그훈련에 사용되는 교재 또는 매뉴얼의 제목과 그 간략한 내용, 그리고 그 사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인력의 유형을 적시한다.
근거	CRPD 제11조는 당사국에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DRR

근거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서비스 인력에 대한 장애포괄적 훈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DRR 서비스 인력에 대한 훈련은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력인바, 과정지표에 해당한다.
산식	지난 1~2년 동안 DRR 서비스 인력의 훈련에 사용된 모든 개별 교재 또는 매뉴얼 중 장애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교재 및 매뉴얼의 제목과, 그 고려한 내용과 그러한 교재 및 매뉴얼의 사용 대상이되는 서비스 인력의 유형을 서술한다. 또한 장애 특정적인 국가 DRR 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면, 그훈련에 사용되는 교재 또는 매뉴얼의 제목과 그 간략한 내용, 그리고 그 사용 대상이 된 서비스 인력의 유형을 서술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국가 DRR 서비스 인력의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개별 교재 또 는 매뉴얼
주기	1~3년
분리	주류 DRR 서비스 인력의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개별 교재 또는 매뉴얼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장애로 분리한다. 그리고 이를 추가적으로 성, 연령 등으로 분리해볼 수 있다.
코멘트 및 한계	DRR 서비스를 하는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의 범위는 너무 넓고 불분명하며 '가용성'이 의미하는 바도 불분명하여 본 지표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훈련의 가용성'이라 함은 실제로 훈련이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훈련이 장애포괄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에 그 대신 훈련 교재 또는 매뉴얼의 장애포괄성 여부를 파악한다. 이 경우에 훈련 교재 또는 매뉴얼은 있는데 실제로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걸러지지 못한다는한계가 있다.



지표명	7.3 접근 가능한 긴급대피소 및 재난구호소의 비율
정의	본 지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난 발생 전 또는 직후에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이 집을 떠나 하루 밤 이상을 머물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전에 지정된 긴급대피소 중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긴급대피소가 차지하는, 백분 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다른 하나는 재난 지역에 있는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재난구호소 중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를이용할 수 있는 재난구호소가 차지하는,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그런데 '재난구호소'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개념으로 그 정의가불분명한 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측정하지 않는다. '구호물자 및 서비스 제공'은 대개 긴급대피소 내에서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긴급대피소'는 재난 시 이재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떠나 하루 밤 이상 잠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는 집단적 장소로 그 수용자들은 재난 이후 자신들의 집이 온전한 경우 이곳에서 본래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숙사, 군대막사, 빈 아파트 등과 같은 일시적인 주거로 옮겨진다. 긴급대피소도 일종의 주거지이므로 이것도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향유하는 데 기본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추위, 강우를 포함한 각종 기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본지표는 긴급대피소의 모든 구성 요건을 포착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접근성만 보는 것이기에 긴급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의 접근성을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한다. 본 지표에서 긴급대괴소가 접근 가능한지 여부는 그것이 긴급대피소 시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는지 여부다. 그러한 접근성 기준은 준수될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떤 국가는 긴급대피소에 대한 특정한 접근성 기준은 준수될 수 있게 모자면 국가는 긴급대피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본래 용도와 관련한 접근성 기준만 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후자는, 예를 들면 긴급대피소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긴급대피소 시설로서의 별도의 접근성 기준은 없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학교 시 설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긴급대피소에 대한 접근 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가주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기준은 법이나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준수에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이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이러한 접근성 기준이 없다면 본 지표는 해당 국가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어떤 긴급대피소가 공식적인 접근성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어떤 국가는 접근성 기준의 모든 항목을 다충족시켜야만 이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어떤 국가는그 기준들을 일정 정도 이상 충족시키면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의

본 지표에서 긴급대피소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에 한정한다. 장애인에게 물리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시설을 설치, 변경, 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건물에 접근하여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수화통역 등의 인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지표에서 긴급대피소는 전쟁이나 화재 등이 아닌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긴급대피소에, 그리고 사전에 지정된 긴급대피소에 국한한다. 사전에 지정된 긴급대피소만 보는 이유는 그렇지않은, 즉 유사시에 급히 조성되는 긴급대피소는 그 숫자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간이 넓고, 화장실이 있으며, 식수, 난방 및 조명 등이 갖추어진 학교, 실내체육시설 등을 긴급대피소로 사전 지정한다.

근거

CRPD 제11조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CRPD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긴급대피소 및 난민캠프의 공중위생시설에 대해 그리고 배분되는 인도적 지원구호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한편 긴급대피소도 주거 공간인 이상 그 점유자들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충분한 공간, 추위, 강우를 포함한 각종 기후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식수, 요리할 에너지, 난방 및 조명, 화장실 및 씻을 곳 등 천연 및 공공재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감당 가능성, 살기에 적합함, 접근성 및 입지 등이 있다. <sup>21)</sup> 본 지표는 주거 공간으로서의 긴급대피소가 갖추어야 할 여러 것들 중에서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다. 긴급대피소에 대한 접근성은 그 자체가 중요한 장애인의 권리인바,이를 포착하는 지표는 결과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식	(긴급대피소로서의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 또는 본래 용도의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긴급대피소의 총수/ 사전 지정된 전국의 자연재해 대처용 긴급대피소 총수) * 100 관련 공식적인 물리적 접근성 기준이 없는 경우에 그 비율은 '0'이다.
자료 수집 및 출처	사전 지정된 긴급대피소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조사 자료
주기	3~5년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대개 국가들은 학교, 체육관 등과 같이 넓은 공간을 가진 공공시설을 긴급대피소로 사전에 지정한다. 이들 시설은 본래 긴급대피소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이 긴급대피 시 이에 접근하여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긴급대피소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여이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별도의 긴급대피소 접근성 기준이 없는 정부는 그 대신 긴급대피소로 지정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바, 이 공공시설의 접근성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시설에 임시 설치되는 긴급대피소도 접근성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단, 긴급대피소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의 접근성 기준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불충분할 소지는 있다.

<sup>21)</sup> www.spherehandbook.org/en/introductionn-4 참고.

지표명	8.1 ICF에 근거한 장애의 연령·성별·인종·사회경제적 지위별 출현율	
정의	본 지표는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 모두가 동일한 국제기능 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라는 장애 개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특정 목적의 서베이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ICF에 근거하여 측정한 장애의 연령별, 성별, 인종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출현율이다.  'ICF에 근거한 장애'라 함은 ICF라는 장애를 개념화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장애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ICF는 건강 조건과 환경·개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장애의 구성요소로 삼는다: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손상, 활동의 제한, 그리고 참여의 제약. 한편 현재 ICF에 근거하여 장애 출현율 조사를 실시할 때 보기 (seeing), 듣기(hearing), 걷기(walking), 인지(cognition), 자기 돌봄 (self care),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6개의 핵심적인 기능 영역 또는 기본 행위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본 지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 소득 및 직업 유형이나 이들을 종합한 변수를 가리킨다.	
근거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증거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이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필요한 장애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착하는 지표다. CRPD 제31조제1항은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 출현율 통계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려면 장애인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변수로 분리 가능해야 한다. 분리되지 못하는 장애 출현율 통계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만을 보여줄 뿐이다. CRPD 제31조 제2항은 장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가 적절할 경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	본 지표는 장애 통계의 구축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이행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 에서 과정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지표에서 ICF에 근거한 동일한 장애 개념이 사용되기 때 문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애 출현율을 확보할 수 있다.
산식	ICF에 근거하여 측정한 장애의 연령별, 성별, 인종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출현율
자료 수집 및 출처	본 지표는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할, ICF에 근거한 특수 목적의 서베이가 본 지표를 위한 데이터의출처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가구조사에 ICF에 근거한 장애 출현율을 포착하기 위한 간략한 조사 항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조사 항목은 유엔에스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각 국에 권고해야 할 것이다.
주기	3~5년
분리	상기 지표의 정의에 이미 여러 요인에 의한 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요인에 추가해야 할 것은 장애 유형이다. 참고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 또는 가구 소득, 연령, 교육 수준 또는 이들 3개 변수 를 조합하여 구성한 점수일 수 있다. 교육 수준 변수로는 최종학력 과 교육년수 둘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에 더하여, 소득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좀 더 잘 포착하는 주요 부동산을 포 함하는 축적된 부도 함께 분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코멘트 및 한계	장애인의 권리 또는 복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위 증거에 기반한 장애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은 적절한 장애 개념에 근거한, 그리고 적절히 분리되는 장애 출현율 통계를 필요로 한다. 최근, 장애는 CRPD 전문에 반영된 바처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환경과 장애인의 건강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의결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화에 충실한 ICF는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장애를 3 가지 구성요소로 보는데, 장애를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류하 려면 이 3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 다. 다만 아직은 많은 국가가 이처럼 총체적으로 장애를 분류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단계적 노력이 요구 된다.

## 코멘트 및 한계

교육 수준, 소득, 직업 등은 각각 개인의 사회적 계층의 서로 다른 차원을 포착하고, 해당 개인에게 가용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지표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구성된 점수로만들어 SES(social economic status)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은 SES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일 것이다. 교육은 개인에게 좀 더 나은 삶의 결과를 달성하는데 수단이되는좀 더 발전된인지적기술과 지식을 부여한다.이러한 증진된기술 및 지식은 교육을 받은기간(년수)에 비례하는바, 교육년수는 중요한 지표가될수 있다.그런데일정한 교육을 마쳤다는 자격(credential)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불연속적 또는 단계적일수 있다. 또한 높은수준의 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은 개인에게좀 더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그개인에게 특정한 사회적기대및 규범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그의사회적 자원을 확장시킬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교육수준은 개인의 최종 학력에 의해 측정될필요가 있다.

## 코멘트 및 한계

참고로, 현재 ICF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공식적 장애 정의를 채택하여 이를 장애 출현율 계산에는 물론이고 장애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 기준으로 삼는 등 장애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ICF에 근거한 장애 개념 및 장애 출현율 데이터는 어쩌면 정책적인용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ICF 프레임워크가 적절하고 바람직한 장애 개념의 발전 과정에 위치하는 것이고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면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장애 개념을 ICF 프레임워크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들은 본 지표의 측정 결과로 도출된 장애 출현율과 기존의 공식적 장애 정식에 근거한 장애 출현율과의 갭을 보고하고 그 갭의 근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표명	8.2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 수
정의	본 지표는 자국의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인천 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2017년까지 모두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의 수이다. 어떤 데이터가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유엔에스캅이 작성할 공식적인 인천전략 지표 메타데이터시트에 분명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메타데이터시트에 명시된 데이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표로 포착하려는 특정 인천전략 목표에 상응하는(유사한) 목표의 달성 진척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상당 기간 동안주기적으로 수집했을 소지가 있다. 만약 그 유사 데이터가 상당 기간 동안주기적으로 수집했을 소지가 있다. 만약 그 유사 데이터가 상당 기간 동안주기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 권리 실현의 진척 상황의 추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가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다. 만약 특정 인천전략 목표의 달성 진척 상황을 아·태지역 국가 사이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가치가 있는 유사 데이터 및 그에 근거한 유사 지표의 사용은 허용될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해당 국가가 다른 합리적으로 불가피하게유사 데이터 및 유사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용은 허용될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유사 인천전략 지표가 본래의지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유사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근거	국제인권규범이나 국제개발목표의 이행 및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와 그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규범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새천년개발목표의 경우, 그 목표의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와 그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 및 그 출처, 지표 산식, 지표의 한계 등에 대해 기술한 메타데이터시트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CRPD 국가보고서 작성지침(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C/23))은 당사국들은 유엔인권최고(OHCHR)의 인권 이행의 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보고서(Report on Indicators for Promot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HRI/MC/2008/3)를 참조하여 자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제를 구축했음을 국가보고서에 적시할 것을 요구한다. 당해 OHCHR 문건은 특정 권리 구현에서의 진척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등 세 가지 형태로 해당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며, 각 지표에 대해 메타데이터시트를 작성할 것도 권고한다.

근거

국제개발목표의 하나인 인천전략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태지역 각 국은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유 엔에스캅은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지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등을 안내하는 메타 데이터시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아·태 국가는 특정 인천전략 지표와 관련하여 유엔에 스캅의 메타데이터시트에 명시된 데이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표로 포착하려는 인천전략 목표 달성의 진척 사항을 상당히 유사하게 포착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장기간의 관련 장애인 권리의 이행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단지 인천전략 지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데이터로 측정되는 지표가 해당 인천전략 지표와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새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근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유사 데이터 및 유사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아·태지역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 국가 간 비교가 필요한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지표의 경우에는 유사 데이터 및 지표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해당 인천전략 지표의 공식적 메타데이터시트에 언급될 필요가 있다.
산식	자국의 인천전략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2017년까지 모두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의 수 특정 인천전략 목표 달성의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데 요구되는 인천전략 지표 및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 진척 상황을 포착하는 유사 지표 및 데이터는, 그 상황을 아·태지역 국가들 사이에서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 데이터가 상당 기간 동안주기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해당 상황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밖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인천전략 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및 출처	유엔에스캅 사회개발국은 2013년 여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아·태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인천전략 지표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각 정부의 관련 데이터 보유여부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	2017년에 조사 실시 예정
분리	적용 불가

국제인권규범이나 국제개발목표의 이행 및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와 그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중 하나는 데이터 및 지표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전략 지표 및 관련 데이터도 그 예외는 아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장애 관련 데이터 및 지표는 개별 국가를 가로질러 장애인의 해당 권리 또는 복리의 상황과 당해 상황에서의 각국의 상대적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하여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는,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지표는 "보편적으로 유관한 지표"(universally relevant indicator)(HRI/MC/2008/3, ¶ 16)라 부를 수 있다.

### 코멘트 및 한계

그런데 그러한 지표 및 관련 데이터 모두를 국제 비교가 가능하게 구축하기는 어렵다. 이는 나라마다 개발 및 인권 수준, 관련 개념, 법과 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지표는 국가마다 특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러한 지표는 "맥락적으로 특정한 지표"라 부를 수 있다.

인천전략 지표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유관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인천 전략 지표가 저마다 상황이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는 유연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으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의된 지표 및 데이터와 유사한 지표 및 데이터를 대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천전략 목표 달성의 진척 상황 중 아·태지역 국가를 가로질러 비교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 지표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유사 지표 및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표명	8.3 건강·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주류 개발프로그램 및 정부 서비스에서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분리 데이터의 가용성
정의	본 지표는 정부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자신의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행정 통계 데이터 중 그리고 이러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서베이 데이터 중 장애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연령으로 분리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로 어떠한 것들을 집계·관리하고 있는지 포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장애여성에 특정적인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본 지표의 대상이 아니다. 본 지표의 대상이 되는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여성을 타깃으로하는 것으로 국한한 이유는 우선은 지표 제목에서 그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로 제시된 '성'과 '생식보건' 서비스가 주로 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장애 여성 및 소녀가 배제되고 있는 실상을 염두에 둘 때 그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통계를 장애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타깃으로 하는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범위가 너무 넓어 본 지표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범위가 너무 넓어 본 지표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범위도 적지는 않은데, 이에는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과, 사회적 소수자로서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 주로 포함된다. 이는 여성을 위한 고용, 직업훈련, 직업재활, 교육, 폭력 예방, 정보접근, 건강, 문화, 체육등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행정 통계는 장애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연령으로도 분리되어 집계·관리되어야 한다. 연령으로 분리하는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를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 분리 통계 데이터의 '가용성'은 장애 그리고/또는 연령 변수로 분리되는 통계 데이터의 제목과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는 것으로 가장 잘 포착될 것이다.

근거	CRPD 제31조 제2항은 당사국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통계 자료 등의 정보가 "적절할 경우구성요소별로 분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데이터는 동 조항이 밝히듯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장애로 분리가 가능해야지만 그 데이터는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에 인권 증진에 있어서의 갭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분리 데이터는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명하는 데"필요한 것, 즉도구적인 것이기에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산식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연간 이용에 관한 모든 개별 행정 통계 데이터나 서베이 데이터들 중 장애 그리고 /또는 연령으로 분리 가능한 것들의 제목과 간략한 내용
자료 수집 및 출처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자신의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행정 통계 데이터, 또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자신의 개발 프 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서베이
주기	행정 통계의 경우 1년, 특수 목적의 서베이의 경우 3~5년
분리	필요할 경우, 연령으로 분리
코멘트 및 한계	적절하다면 모든 주류 데이터는, 우선은 장애로, 그리고 성과 연령 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본 지표는 정부의 주류 여성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성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령으로 분리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리 데이터가 없으면 장애여성이 장애로 인해 주류 여성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얼마나접근할 수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본 지표는 중요하다. 다만 본 지표에서 '가용성'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고 '주류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범위도 불분명한바, 이 때문에 본 지표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엔에스캅이 본 지표의 '가용성'이 요구하는 바와 '주류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인천전략 핵심지표별 메타데이터 Applyonyw
지표명	9.1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 수
정의	본 지표는 국제법에 따라 CRPD를 준수하는 데 동의를 표명한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숫자를 말한다. 이러한 동의 표명은 동협약의 비준이나 가입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준은 통상적으로 국내적 절차나 입법을 요한다. 참고로, 장애인권리협약 서명국은 협약에 예비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검토하고 그 비준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다.
근거	국가가 CRPD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할 때, 국가는 협약에서 인정된 장애인의 권리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국가는 국내 입법과 조치들을 협약상의 의무사항과 양립가능하게 가져가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또한 장애인 권리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협약에 따라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회(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지표는협약에 구속되어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는 비준 또는 가입을 포착하는 것인바, 따라서 이것은 구조지표이다.
산식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으로서 CRPD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총수로 계산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유엔법사국(Office of Legal Affairs)이 획 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OHCHR이 제시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유엔법사국은 국제협약들을 등록하고 공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 사회정책개발부 장애인권리협약과(Secretaria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CRPD) in the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DSPD)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at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의 공식 웹사이트인 유엔 인에이블(United Nations Enable)의 '협약 및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이라는 자료를 활용할수 있다.

주기	OHCHR은 상기 자료를 6개월마다 업데이트한다. 유엔 인에이블의 당해 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따라서 1년 주기로 측정이 가능 하다.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협약 서명국은 아직은 협약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를 표명한 국가는 아니다. 서명은 인증의 수단이며 협약 제정 과정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서명국의 의지를 표명한다. 서명은 서명국에게 협약의 비준 및 가입 과정을 진행할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또한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알아서 삼가야 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본 지표는 국가의 협약 수용에 대한 정보와, 협약의 조항에 부합되게 장애인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지표는 협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나 그이행결과를 포착하지는 못한다.



지표명	9.2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별금지법의 유무
정의	본 지표는 장애인의 권리, 특히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옹호 및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이행 유무를 말한다. 차별금지법은 장애 특정적일 수도 있고 장애 이외에 다른 특성에 근거한 차별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일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차별 금지가 해당 법의 핵심 목적인 법을 말한다. 한 두 개 조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그 주요 목적이 차별 금지가 아닌 법은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거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는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옹호 및 보호'한다 함은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당한 장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제를 포함해야함을 의미한다. '국가 차별금지법'에서 '국가'는 해당 법이 지방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입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근거	장애인의 권리, 특히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이행 유무는 장애인의 인권을 구현하겠다는 일국의 약속을 가장 잘 포착하는 지표 중의 하나다. 이는 CRPD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제5조 평등 및 비차별에서 구체화되며 다른 모든 조항들을 관통하는 장애인의 평등권의 이행을 포착하는 지표다. 한편 협약 제5조 제3항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편의 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바, 합리적인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간주하는 것을 본 지표의 차별금지법의 요건으로 두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본 지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포착하는 구조지표다.
산식	차별 금지가 주요 목적인 일국 차원의 법이 장애를 근거로 한 직접 차별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장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구 제하는 기제를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을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본 지표에 대한 데이터의 주요 출처는 해당 차별금지법령에 관한 국가의 기록이다. 유엔에스캅이 매년 '장애 일람'(Disability at a Glance)을 위해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서 제출받는 자료도 그 주요 출처가 될 수 있다.
주기	'장애 일람'데이터는 일년 주기로 접근 가능하다.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국제적으로 대체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장애차별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고용, 교육, 서비스 영역 등에서 세부적으로 금지하는, 장애 특정적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하는 차별의 근거에 장애 이외에도 성, 인종, 종교 등 다른 속성도 포함시킨 법으로, 대개 이러한 법은 장애차별법처럼 세부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장애평등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장애에 근거한 차별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 개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장애 예방과 조기발견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조항도 두는 종합적인 장애인권법이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본 지표의 차별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등이 있는데, 일부 장애차별법은 이밖에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과 같은 다른 유형의 차별도 금지하고, 장애인 이외에 장애인을 보조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기도 한다.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사회적 환경이 장애와 상호작용하여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기본 목적이 장애인의 동등한 또는 완전한 사회참여인 이상 본 지표의 차별금지법의 요건에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금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한 개인을 구제하는 기제를 규정한다. 이 기제는 법원,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만 등을 통한 구제 절차를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이 개인이 차별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 이용할수 있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하여 해당 차별 금지조항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 이는 본 지표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코멘트 및 한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대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규정한다. 그 대표적인 영역은 고용이고, 그 밖에 교육, 서비스 등이 그 영역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국가들은 법에 장애 차별이 금지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별도의법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본 지표의 차별금지법 요건은 법이 포함해야 하는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이 장애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특정해야 함은 그 요건이다.

회원국이 본 지표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대외적으로 보고할 때 자국의 차별금지법이 상기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어떠한 유형 의 차별을 금지하는지, 어떠한 구제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 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지 밝히는 것은 본 지표의 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지표명	10.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정의	본 지표는 유엔에스캅 회원국·준회원국과 이들 국가의 국내 민간 부문이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체들의 계획 및프로그램에 대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기부한급액과, 그 기부가 물품인 경우에 이를 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합한 금액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된 금액을 가리킨다. 기부한 물품을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해당 물품의 국제시장 가격을 그 기준으로사용한다. 이 기부에는 예산 지원, 기술협력, 부채경감,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NGO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 기부에 상환의무가부과되는 유상원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계획 및 프로그램'이라함은 그 내용 및 목적이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것임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을 가리킨다. 이들 계획 및 프로그램은 장애특정적일 수도 있고 장애 포괄적일 수도 있다. 만약 기부가 장애포괄적인 계획 및 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그 기부액 중 해당계획 및 프로그램을 장애 포괄적으로 이행하는 데 소요된 기부액만을 본 지표의 기부액으로 집계한다. 예를 들어 학교를 신축할때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장애 포괄적 계획을 위해 학교신축 비용 전체를 기부하는 경우, 이 전체 기부액 중 장애학생의 접근성 확보에 든 비용만을 본 지표의 기부액으로 잡는다. 기부가 1년 단위가 아닌 수년간 이루어지고 이를 1년 단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 평균 기부액으로 연간 기부액을 산정한다. '실체들'이라함은 해당 계획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직이나 개인들로, 여기에는 아·태지역 내의 모든 조직과 개인들이 포함될 수있는데, 유엔에스캅 사무국, 국제기구, 지역기구, 아·태지역 내 다른나라 정부, 기금, 아·태지역 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제협력 차원'의 기부라 함은 그 기부가 국내 장애인이 아닌 타국 의 장애인을 위해 또는 아·태지역 차원의 계획 및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기부는 공여자가 해당 계획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실체에 직접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여자가 장관선언 및 인천전 략의 이행의 지원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는 기금 등에 기부하면 이 정의 들이 다시 이를 실제로 해당 계획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실체에 공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기부액이 중복 산 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초 공여자가 기금 등에 기부한 액수만 집계하고 기금 등이 이를 다시 계획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실체 에 공여한 기부액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아·태다자간 신탁기금 (Asia-Pacific Multi-doner Trust Fund)에 기부한 금액은 지표 10.1 로써 포착하는바, 본 지표에서는 집계하지 않는다. 인권 증진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모든 국제인권규약에서 인 정되며, CRPD 제32조 제1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MDGs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는 개발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 성을 인정하여 이를 목표의 하나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고, 인천전 략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전략은 동 전략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강화를 그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고, 그 강화에 필요한 국 제 기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기부액을 포착하는 본 지표를 설정 해 놓았다. 또한 그 기부를 받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태다자 근거 간 신탁기금(Asia-Pacific Multi-doner Trust Fund)를 구축하고 한 국에 기반할 장애인권리실천기금(Make the Right Real Fund)의 구 축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 는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에서 가장 큰 비중은 각국의 공적 개발원조에 있을 것이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는 관련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수단이자 노력이 지 그 자체가 권리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부를 포착하는 지표는 과정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식	모든 유엔에스캅 회원국·준회원국과 이들 국가의 국내 민간 부문이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실체들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과, 그 기부가 물품인 경우에 이를 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된 금액기부한 물품의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제시장 가격으로 환산한다.
자료 수집 및 출처	각국이 연도별로 관리하는 공적개발원조 통계 자료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정보에 대해 각국이 파악하여 정리한 자료 유엔에스캅은 각국이 제공한 연간 기부액 정보를 이용하여 아·태지 역 차원의 총 기부액을 집계.
주기	1년
분리	적용 불가
코멘트 및 한계	기부액은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한 자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한 자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정부인지 민간부문인지, 그리고 그 자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포착하지 못한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유엔에스캅은 우선 각국이 본 지표의 총 연간 기부액을 정부와 민간부문이라는 기부 주체로 분리해서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타깃으로 한 기부액을 분리하도록 권고하거나 9개 인천전략 목표로 분리하도록, 또는 장애 특정적인 기부액과 장애 포괄적인 기부액으로 분리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발 행 일 : 2013년 12월 인쇄

발 행 인 : 변용찬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412-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031-421-8418

ISBN 978-89-6921-125-5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